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在日韓國人の 終焉

(『在日韓國人の 終焉』 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日科

朴宣昱

2007年 8月

在日韓國人の 終焉

(『在日韓國人の 終焉』 翻譯論文)

指導教授 李 禮 安

朴 宣 昱

이 論文을 通譯大學院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8月

朴宣昱의 通譯大學院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07年 8月

역자서문

『재일한국인이 종언』의 서두와 말미에서 정대균씨는 재일의 존재이유를 없애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 자신이 직접 재일 2세로서의 삶을 살아왔으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도 14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이 단지 피상적인 이론서에 그치지 않고 우리들 가슴속 깊이 와 닿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사실적이고 솔직하다 못해 때로는 극단적이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들게 되지만 말이다.

이 책을 접하면서 보다 재일의 현시점에서의 입장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과거의 재일에 관한 관점이 얼마나 오류가 많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정대균씨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재일들의 정체성과 귀속의식이 괴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국적을 보유한 한국인으로서 일본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의 입장에 있지만 그들에게는 한국인 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일본사회에서 외국인이라는 인식도 희박하다. 따라서 지금은 그들이 정체성에 맞추어서 국적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일본국적을 취득해서 당당하게 일본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차피 일본에서 태어나 교육받아 자랐으며 앞으로도 평생을 일본에서 살아갈 이미 일본인에 더 가까운 존재이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굳이 한국국적만을 강요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일 간의 월드컵경기를 관전할 경우 과연 그들은 어느 나라를 응원할까? 그러한 그들이 일본사회에서 재일구세대들의 잔재인 한국국적을 고수하면서 온갖 부조리를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서 완전히 일본인화 된 그들에게 한국국적을 강요하며 한국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인용문의 몇 가지 사례들이 보여 주듯이 일본이 출생지인 재일 2세들 스스로가 아무리 한국인임을 각인시키고자 한국인으로 회귀해서 살아가려 노력해도 결국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어째서 일까? 아마 본서의 마지막장까지 읽게 된다면 독자들도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재일들이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일본사회에서 온전한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지니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도와주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끝으로 이번 번역을 위해 테마선정에서 감수에 이르기까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지도교수님과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의 『재일한국인의 종언』이란 제목을 보면 언뜻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현자체가 약간 극단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확실히 무엇을 뜻하는지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으리라 본다.

‘재일한국인의 종언’이란 재일들의 존재자체의 종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재일로서의 삶에 대한 존재의미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더 이상 재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일본사회에서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들은 한국국적을 유지한 채 일본사회에서는 이방인과도 같은 존재로 살아왔다. 하지만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서 교육받고 앞으로도 평생을 일본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이 과연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한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 한국국적은 일종의 굴레와도 같은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정체성과 귀속의 괴리가 있다. 즉, 한국국적을 보유한 한국인이라는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라는 의식자체가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일본사회에서 외국인으로 남아 있으면서도 또한 외국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은 일본인에 가까우며 그러한 정체성에 맞추어 귀속을 즉, 국적을 바꾸는 길이 가장 현명하며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지금까지 마치 공중에 떠있는 존재처럼 모호한 삶이 아닌 당당한 국민국가의 구성원이 되어 권리와 의무를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그러한 재일들의 선택을 비판하기보다는 용기와 힘을 보태주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본국의 한국인들과도 진정한 평등관계에서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시작하며

1999년 말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등록자수는 155만 6천명이다. 이는 역대 최고치이며 총인구의 1.23%를 차지한다. 등록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한국·조선국적자들인 63만6천명(40.9%)이며 그들 대부분은 특별영주권자들로서 51만 8천명에 달한다.

특별영주권자란 19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를 계기로 일본국적을 상실한 한반도와 대만 출신자들 및 그 자손들을 말하며, 제1세대는 일본국민(신민)이었지만,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자들의 대부분은 그 2세와 3세들로서 4세의 인구도 2만을 넘는다. 그들은 소위 구세대(고참)인 在日들인데, 거기에 일반영주권자들과 90일 이상 체재하는 유학생들과 주재원들을 더한 것이 한국·조선국적자들인 63만 6천명이라는 통계이다.

이와 같이 한국·조선국적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거주하게 된 경위와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본서에서 주요한 관심은 특별영주권자들 가운데 한국국적의 보유자들이며, 이하 그들을 ‘재일한국인’으로 부르기로 한다. 한편 같은 구세대이지만 조선국적 보유자들은 ‘재일조선인’으로 구분하며, 양자를 총칭할 때는 ‘재일’로, 한국 국적자라 해도 8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한국인은 ‘뉴커머 한국인’으로 구별하기로 한다.

나는 본서에서 재일한국인들이 일본국적을 취득해도 좋은 시기가 도래했을지도 모른다고 기술했다. 지금의 재일한국인들을 보고 느끼는 것은 한국국적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귀속의식이 결여되었고 외국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외국인 의식이 결여된다고 하는 정체성과 귀속(국적) 간의 불일치이며, 이러한 상황은 재일한국인들을 불투명하고 설명하기 힘든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다.

재일 2세대인 부모들은 만약, 그 3세대인 자녀들이 어째서 자신들은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일본인이 아닌지 물어왔을 때, 그러한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지금의 재일가족의 중심은 재일 2세인 부모들이지만, 한국은 그들에게도 귀속의식과 공속감정이 작용하는 곳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그것은 우리 재일들이 한국과 운명을

같이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 재일들이 일본에서 받는 처우는 한일양정부의 협의에 맡겨져 왔는데 귀속의식도 없는 국가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태도를 우리들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재일한국인들은 그 정체성에 맞추어서 귀속을 변경하면 된다. 즉, 우리들은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 되며, 그러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적선택권을 주장하며 귀화절차의 병폐를 비판하면 되는 것이다. 재일한국인들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본국의 한국인들과 대등하고 투명한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재일 한국인들이 일본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일본사회의 다원화와 다양화에 있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 있어서 지금은 이민과 외국인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도 좋은 시기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그 전에 해결해야할 문제는 재일의 국적문제이며 한국계 일본인들의 탄생은 일본사회의 다원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잠깐 자기소개를 하면, 나는 1948년에 이와테(岩手)현에서 태어난 재일한국인 2세이다. 어머니가 일본인이므로 전형적인 2세라고는 할 수 없다. 현재는 도쿄 교외의 국립대학 교원이며 직장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신도시에서 아들과 같이 살고 있다. 지금의 직장에 부임한 것은 1995년이며 다음해 1996년부터 아들과 단둘이 살기 시작했다. 아내는 서울에서 대학교원이다.

도쿄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장기간 한국에 있었다. 1980년 여름,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이곳 대학에서 일본어를 가르쳐 보지 않겠는가?’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나는 미국에서 도쿄로 돌아와 영어 학교에 근무하면서 재일론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앞날이 불투명했고 한국을 모른 채 재일론을 쓰는 일도 불안했다. 어딘가 또 다른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고 아직 독신이 기도 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 딱 좋은 시기였다.

한국에는 막연하게나마 4년 정도의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한국체재 2년 후에 결혼했고, 5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 결국 30대부터 40대 중반까지 14년 동안 경상도 지방인 부산과 대구에서 지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다. 그 동안에 나는 가족이 생겼고 또한 새로운 연구테마를 얻어 인생관과 세계관을 수정함과 동시에 몇 개의 새로운 행동양식을 배울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단순히 즐겼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나에게서 일본과 미국에 이어서 경험하게 된 세 번째의 나라였지만, 그때까지 체험해 온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공평함과 공정함이 결여되었고 지식인들 간에는 내셔널리즘이라는 병이 만연해 있었다. 나는 사실 한국에 있는 동안 언제나 감정이 날카로워 있었다. 그것은 나의 관대함이 모자랐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 그 절반을 차지하며, 나머지 절반은 의분과 사회에 대한 정의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특히 나로서는 한국의 지식인들이 갖는 일본에 대한 편견과 획일적인 방임주의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런 국가에서 일본으로 돌아오자 불쾌한 일도 줄었지만 긴장감도 줄었다. 하지만 14년이나 한국에서 지냈기 때문에 나 자신도 그랬지만 일본사회도 변하지 않았을 리 없었다. 일본인들의 인간관계에서 개인적인 유대관계가 부족하여 뭔가 아쉽다고 느끼게 된 부분은 한국에서의 체제와 전혀 상관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재일론에 대해 강한 위화감을 느끼는 것도 한국에서의 체험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셀비스텔(스탠포드 대학)의 말을 빌린다면, 본서에서 나는 재일한국인임을 의식하면서도 동시에 그 사실을 잊어보려 했다. 많은 재일론자들이 그러하듯이 재일론을 쓸 때에만 성스러운 피해자 = 재일(在日)로 빙의되어 이야기하는 태도는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재일 한국인이다'라는 사실을 '재일'이라는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재미' 혹은 '재한'의 시점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고, 본서에서는 특히 재일한국인들이 본국의 한국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보며 고쳐나가는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들의 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대화로 형성된다(찰스테일러). 나는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2세 혹은 3세의 재일한국인들이 유일하게 대화의 상대로 삼아 온 것은 일본인들 중에서 자신과 동 연배 집단이며, 재일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는 일본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들의 '한국인성'과 '재일성'을 확인해 온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의 대화상대가 일본인들로 한정된다면 보편성이 결여되는 것은 아닌가? 일본인들 대부분은 여하튼 국가에 귀속한다는 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한 적이 없다. 일본국에서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한은 그래도 별 문제가 없지만 재일한국인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재일한국인들의 정체성과 귀속(국적)간에 차이가 있음은 재일한국인들이 불투명한 존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실은 본인이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뜻이다.

내가 본서에서 재일한국인들을 예를 들어 본국의 한국인들과의 상호작용의 시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불투명성을 자각하기 위한 방법이다.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한국인들이 한국국적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 무관심한 사실에 비해, 본국의 한국인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자신들을 한국과 한국문화와의 유대관계에서 확인하고 증명하려한다. 즉, 본국의 한국인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한국인다운 사고로 행동하지 않는 자를 한국인으로 보지 않는다. 재일한국인들처럼 모국어조차 상실하고 서울과 평양 보다는 도쿄를 중심으로 세계를 생각하는 인간은 더 이상 한국인으로는 간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의 상호작용의 상대가 이러한 한국인이었을 때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자신의 신념에 흔들림은 없을까?

내가 위와 같은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소위 글로벌화의 과정에서 재일한국인들은 살아가기 힘들다고 느끼는 일이 많아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국이든 프랑스든 중국이든 상관없이 일본 국외로 나갔을 때 재일한국인들이 본국의 한국인들과 만나게 될 기회는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사실 그런 기회는 일본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재일한국인들이 본국의 한국인들과 만나는 일은 종래에는 친족방문과 여행지로써 방문하는 한국에서였지만, 최근에는 일본에 있으면서도 뉴커머 한국인들과 만날 기회가 있다. 바꿔 말하면 재일 한국인들은 종래에는 일본인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설명하면 되었고 실제로 굳이 설명이 없어도 이해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바뀌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화가 재일한국인에게 가져다준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재일한국인의 종언'이라는 타이틀에 관해서도 한마디 하자면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세대인 한국인들의 역사는 이제는 막을 내려도 된다는 것이며 재일한국인들의 존재 그 자체의 종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웃나라로부터의 뉴커머의 유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재일한국인들이라는 집단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3세와 4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재일한국인들이 앞으로도 외국국적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현상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재일한국인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없애기 위해 쓴 것이다.



재일한국인의 종언

목 차

역자서문	I
국문초록	III
시작하며	1
제1장 정체성과 귀속	8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의식이 부족함	
외국인이지만 외국인의식이 부족함	
제2장 재일의 특이한 상황	15
제3장 귀국과 귀화와 재일의 역사	20
제4장 왜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가?	29
금기와 그것을 지키는 것	
귀화의 대가	
심리적 저항	
생활에 지장이 없다	
히타치(日立)재판투쟁의 유산	
사회적인지도의 고양	
국적불투명의 시대	
마치며	58
저자소개	60
일본어초록	IV

나는 여전히 조선인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본인으로 되어있지 않을까?)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든다.

그리고 실은 자신은 입양아이며 원래는 일본인이었다는 꿈을 꾸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아! 역시 난 조선인인가)

하고 한숨을 내쉬며 이부자리에서 기어 나온다.

(岩本光央 『일본인이 되고 싶은 제일한국인』 아사히소노라마, 2000년)



제1장 정체성과 귀속

일본에 있는 우리들은 유령과도 같은 존재다. 일본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인도 아니다. 실체가 없다. 말로는 그럴 듯하게 말한다. 조국이 있다.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져라. 웃기지마. 우리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조국과 민족이 밥을 먹여주는가? 한국에서 데모가 있었다. 또 데모가 일어났어라고 생각할 뿐이다. 언론의 자유를 신문에 호소한다.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에도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 이유를 아는가? 그런 일로 내 월급이 달라지지 않을테니깐. 나는 상관없다. 일본에서 잊혀진 나에게는.(이기승 『제로한』 講談社, 1985년)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의식이 부족하다.

지금의 재일한국인을 거론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다음의 두 가지 점이다.

- ① 재일한국인들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귀속의식이 희박하다.
- ② 재일한국인들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지만 외국인의식이 희박하다.

한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한편, 일본과의 관계도 나타낸 글인데, 이같은 상황에 대해 나는 재일한국인의 정체성(identity)과 귀속(belonging)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정체성과 귀속은 동의어로써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전자를 주관적인 의미의 것으로, 후자를 객관적 의미의 것으로 구분해서 쓰기로 한다(다니엘벨 『20세기문화의 산책로』 제10장, 다이아몬드 社, 1990년).

후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재일한국인의 국적문제를 생각하면 된다. 민족적 정체성이 재일한국인의 주관적인 귀속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국적은 그 객관적인 귀속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재일한국인들은 말하자면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름이 실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재일한국인들은 한편으로는 ‘서류상의 한국인’일 뿐이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서류상의 외국인’이 될 뿐이다.

좀 더 보충설명을 하자면 ①에서 말한 대로 재일 한국인들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는 한국에 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일 한국인들은 일본국외에 갔을 때 한국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입국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퇴거강제를 당할 경우 송환처는 1차적으로 그 자의 국적국인 한국이 된다(坂中英徳).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또한 한국에 거주권이 있다는 의미이다. 재일 한국인들은 실제로 비자 없이 한국으로 입국하여 1주일간의 관광여행 후, 일본으로 입국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눌러앉아서 평생을 한국에서 살 수도 있다(나는 그렇게 해서 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서 14년간을 한국에서 살았다). 하지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실상'의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재일한국인들은 '사실상'의 한국인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에 거주권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재일한국인들의 대부분은 한국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납세를 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에 거주할 경우에도 외국인이 아니므로 외국인의 등록의무는 없지만 '사실상'의 한국인처럼 주민등록을 할 수도 없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국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민등록 수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에 등재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단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피선거권은 있으며 70년대와 80년대에는 실제로 국회의원이 된 자도 있었다). 또한 국외에 영주권을 가진 자는 병역의무도 면제되므로 이러한 점에서 재일한국인들은 '사실상'의 한국인과는 구별되는 존재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이 재일한국인의 본국과의 객관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주관적인 세계에 있어서 재일한국인들과 한국간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아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재일한국인들에게 한국은 귀속의식과 공속감정이 작용하는 곳은 아니라고 본다. 재일한국인들의 90%이상은 일본이 출생지인 2세나 3세이며 일본출생이라는 사실은 서울과 평양이 아닌 도쿄가 중심이 된 세계관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재일한국인들은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지만 그 신문은 대부분의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요미우리신문이나 아사히신문 등의 일본신문이며 보통의 일본인들보다는 인접국의 뉴스에 관심을 기울인다 해도 그것은 도쿄가

중심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재일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본국의 한국인이 소속된 서울이 중심인 세계관과 별개인 정치·문화적 단위이다.

재일한국인들의 본국과의 심리적 거리의 문제를 생각할 때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 장기간 체재하고 있는 재일한국인 2세들의 경험이다.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는 기업경영자나 비즈니스맨으로서 혹은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장기간 체재하고 있는 재일한국인들이 있다. 의외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장기간 체재하는 재일한국인들에게는 바로 최근까지 주민등록의 의무가 없었다. 재일한국인들에게는 국민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도 외국인들에게 부여된 외국인 등록의무도 없었으며 미등록인 채로 평생을 한국에서 살 수도 있었다. 이는 언뜻 편리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불편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거주지를 증명하려는 단순한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1999년 12월부터 시행된 ‘재외 동포 특례법’은 이러한 상황을 바꿔놓았다. 이후 재일한국인들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주를 신고 할 수 있게 되었고 전화와 자동차의 본인명의 구입과 의료보험가입도 인정되었다.

이렇게 한국에 장기간 체재하는 재일한국인 2세들에 대해 1980년대 중반에 소규모의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 중에 한국에서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사실상’의 한국인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자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제5장 참조). 그들은 재일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각별히 한국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며 때로는 한국인들과 운명공동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을 그만두고 ‘사실상’의 한국인이 되려는 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은 어째서일까? 이는 흥미를 끄는 테마인데,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또한 한국에 대한 신뢰와 경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지만 재일한국인들에게는 필시 그러한 감정과 감각이 부족한 듯하다.

한편, 압도적 다수인 재일한국인들에게 한국이란, 부모들과 조부모들의 고향이지만 자신들의 고향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재일한국인들은 한일 간을 왕래하며, 사는 곳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재일한국인들은 자신들에게 그러한 선택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본국과는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다. 재일한국인들의 90%이상은 일본이 출생지인 세대들이며 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외국보다는 관계가 있는 지역이지만 거의 외국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가깝고도 먼 나라’는 일본인들 보다는 재일한국인들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외국인이지만 외국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②에 관해서는 1995년의 대법원의 판례를 먼저 다루도록하자. 이 판결은 본론에서 ‘헌법상 국적이 없는 외국인의 참정권은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참정권을 요구하는 재일한국인들의 소송을 각하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영주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만드는 것은‘헌법상 금지 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원고(김정규 외 8명)측이 법정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이다. 이 이유서에서 원고는 참정권을 지닌 자는‘국민’에 한정된다는‘국민’에 실제로는‘정주 외국인’도 포함된다며, 그 근거로서 거론되는 것은 재일한국인들이 얼마나 일본인들과 동질적인지이며 또한 본국의 한국인들과는 이질적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상고인 등은‘한국 국적을 소유한 자’라는 한 가지 사실을 제외하면 그 생활실태에서 전혀‘일본 국적을 소유한 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차이점도 없으며 동질 그 자체라 해도 좋다.

예를 들어 상고인 김정규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효고(兵庫)현 오자키(尾崎)시 고노우치(戸ノ内)에서 1932년7월11일에 출생하여 中村朝広라고 이름 지어졌으며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는 이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略)

위의 김정규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생활한 자이며 일본인들과 함께 공부하고 일하고 교우관계를 가지며, 주소지에서는 그 지역사회생활에 완전히 융화한 자이다. 게다가 일본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 생활양식에서도 일본인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리고 보통의 일본인들과 똑같이 각종 납세의무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 등 각종복지제도에서도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의 대우를 받고 있다.

위의 김정규와 같은 재일한국인들은 현재 의무교육에 관한 아동취학통지도 받고 있고 초·중학교의 의무교육은 무상이며 각종공무원직에도 취직할 수 있으며 의사, 치과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의 자격취득도 인정되어, 일본국적을 가진 자와 차등 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일본국 헌법의 국제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과 일본국적소유자와의 유일한 차이점은 선거권, 피선거권의 취급이었다.(略) 그러므로 위의 김정규 등 외국국적 보유자들에 대해 일본에서의 공적 사회생활에 대한 적극적 참가가 부당하게도 단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의 김정규 이외의 상고인 등도 모두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일본에서 일본인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동안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에서 생활한 적도 없고 한국을 방문한 적도 없이 일본사회만이 생활의 본거지인 사람들이었다.

위와 같은 생활실태에 대해서는 상고인 등의 개개인만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상고인 등과 그 가족전부 아니 친족전체가 일본사회에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상고인 등의 조부들이 한국을 떠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는 친족도 없으며 친구조차 없는 상황이다.(略)

당연히 일본어 읽고 쓰기 능력도 일본인들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 오히려 한국어 이해력에서 일반 한국인들에 훨씬 못 미치며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에서 상고인 등은 심지어 외국인과 같은 감정으로 대해지고 있다.

한국에서 실제로 생활을 한 적이 없는 상고인 등에게는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언어를 생활용어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생활본거지를 판단하기 위한 결정적 기준이라 해도 좋다. 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귀속의식이 있을 리가 없다.(略)

말하자면 상고인 등은 '한국국적' 보유자라는 한 가지 사실만을 제외하고는 얼굴의 형태는 물론 그 생활양식, 교육과정, 사회생활 등에서도 '일본국적' 보유자들과 구별할 수 있는 점은 하나도 없다.

재일한국인들이 얼마나 일본인들과 동질적인지를 이 정도로 정열적이며 솔직하게 기재한 글은 아마 전례가 없을 것이다. 공생론과 다문화주의 시대에 동화주의적인 글은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위의 글은 내가 ②에서 말하고자했던 많은 부분을 대변해 주고 있다. 즉, 재일한국인들은 정치적 권리를 제외하면 일본인과 거의 다름이 없는 권리와 의무관계 속에서 살고 있으며 신체·문화적으로도 양자를 구별할 수 있는 점은 없다. 그러므로 재일한국인들은 '헌법상의 국민'에 해당하며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위의 '이유서'는 말하고 있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완곡한 것으로서, 따라서 재일한국인들에게 외국인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상①②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재일한국인들은 한국국적을 보유하면서도 한국인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외국인이면서도 외국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두 가지 상반된 면이 함께 발생하는 상황이며, 재일한국인들은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불투명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위에서의 불투명성이 재일한국인들에게 현저해진 것은 언제부터일까? 그것은 아마 80년대 이후일 것이다. 나는 60년대 말에 청년기를 보냈지만 나보다 약간 위의 연배였던 재일 2세의 한 청년이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형용한 ‘우리들의 혼은 현해탄 위에 등등 떠 있다.’라는 글이 있었다. 여기에 개인차는 있지만 재일 2세인 청년들의 정체성이라 하더라도 80년대 이전에는 보다 본국과 일본 간에 균열이 있다는 느낌이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인도 아니면서 외국인도 아니다.’라는 지금의 정체성은 보다 불투명한 성격으로 보이며 여기서는 갈등의 요소가 적다.

80년대는 재일한국인들의 청년세대가 2세에서 3세로 이행되기 시작한 시기이며, 동시에 공식으로의 진출과 참정권을 제외하면 재일한국인들이 일본인들과 거의 다름없는 권리와 의무관계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 시기다. 그 계기가 된 것은 79년의 국제인권규약 가맹과 81년 난민조약의 비준이며 이러한 국제조약의 비준과 가맹은 그에 모순되는 국내법을 개정 할 수밖에 없게 했다. 공영주택의 입주와 주택금융공기금의 용자, 국민연금 (경과조치를 제외한), 아동수당의 급부 등에서 국적조항이 철폐된 것은 79년에서 82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운동의 성과인 동시에 국제조약의 비준·가맹의 부산물이었다.

전후 재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82년은 52년과 함께 중요한 해였다.(染泰昊 『부산항에 돌아갈 수 없다』 제3서관, 1984년, 佐藤勝巳 『재일한국·조선인들에게 묻는다』 亞紀書房, 1991년). 52년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對日 평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구식민지출신자들과 그 자손들이 일본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한 해로 본다면 82년은 사회보장의 적용과 행정서비스의 수익 등에서 영주외국인들과 국민들 간에 구별이 없어진 해이며 ‘협정영주’를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 ‘특별영주’의 길이 열린 것도 그 해의 일이다. 재일한국인들의 ‘도시락 반찬’과 부모들의 ‘언어와 복장’에서 이질성이 사라진 것은 이 시기의 일이며 또한 한국인들이 차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없어진 것도 이 무렵부터라고 생각된다.

다.

93년, 재일한국 청년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8세부터 30세까지의 재일한국인 8백 명 가운데 ‘민족적 차별’의 체험이 ‘매우 자주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2.5%, ‘자주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6.5%, ‘약간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32.5%, ‘거의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28%, ‘전혀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30.5%이다(福岡安則·金明秀 『재일한국인 청년의 생활과 의식』 동경대학 출판회, 1997년).

오늘날 재일한국인들은 정치적 권리를 제외하면 일본인들과 거의 다른없는 권리와 의무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취직이든 결혼이든 재일한국인들의 삶이 국적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는 적어진 셈이다. 현재 한국·조선국적을 가진 재일인들의 일본인들과의 통혼율이 80%를 넘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말해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통계일 것이다.



제2장 재일의 특이한 상황

그렇다면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정체성과 귀속의 어긋남이라는 상황은 재일한 국민들에게 특이한 상황인 것일까?

정체성과 귀속이 불일치하는 상황은 광의로는 민족주의적인 그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며, 그런 의미에서는 재일한국인들의 경험도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거주국의 국적을 공유하면서도 대다수와는 구별되는 귀속의식을 갖는 예로서 그 상당수는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귀속관계라는 형태를 갖는데 분리독립운동처럼 자신들의 집단정체성에 어울리는 새로운 국민국가의 창조를 지향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원격지 국가주의’(베덕트 앤더슨)와 같이 조국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면서도 조국에 대한 애국심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재일한국인들도 해당되는 이민형 민족주의 그룹에는 정체성과 국적이 불일치되는 사례를 가끔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중국계 주민들은 오랫동안 중국과의 문화적 유대를 지속시키고 중국어를 말하고 중국국적을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중국과의 긴밀한 유대는 60년대에 말레이시아가 브리튼령(말레이시아계 주민) 우대정책을 추진하자 흔들리게 된다. 많은 중국계 주민들은 정부의 브리튼령 우대정책을 이전의 영국통치처럼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브리튼령과 함께 말레이시아 연방시민이라는 새로운 국적을 공유하게 되며, 게다가 평등권까지도 보장받을 수 없는 사태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보다 시련을 겪은 것은 베트남민주공화국(북베트남)의 북부·월북지방에 거주하는 중국계 주민의 경우이다. 그들은 1945년, 북베트남이 프랑스와의 전쟁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스스로를 화교라고 칭하는 일이 많았다. ‘화교=외국인’이라면 전쟁에 휘말리는 일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북베트남이 중국과 우호관계에 있었던 시대에는 중국국적을 가지면서도 베트남공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하고, 게다가 병역을 포함한 의무는 강제되지 않는 등 일종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권은 7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악화와 베트남통일의 과정에서 박탈당하게 된다. 중국국적의 주민들은 일반외국인으로

취급받게 되었고, 그것은 이윽고 캄보디아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대립과 중첩 되었으며, 중국계사회에 동요를 일으키고 대량 난민을 발생시킨 요인이 된 것이다(山内昌之, 민족문제연구회편 『입문·세계의 민족문제』 일본경제신문사, 1991년).

정체성과 국적의 불일치와 관련된 보다 최근의 사례는 발트3국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주민의 경우다. 3국 가운데에서도 러시아계 주민들에게 특히 엄격한 조치를 취했던 것은 러시아어화가 가장 진행되고 있었던 라투비아의 경우로서, 94년의 라투비아의 국적법에 의하면 라투비아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은 40년 소련합병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들과 그 자손들이며, 이에 해당되는 것은 240만 인구 가운데 170만 정도다. 라투비아를 구성하는 것은 라투비아인(52%), 러시아인(34%), 베라르시인, 우크라이나인 등의 민족주의적인 그룹인데 약 50만의 러시아계 주민들은 2000년까지는 귀화신청도 할 수 없었으며 또한, 국적취득을 위해서는 라투비아어와 헌법, 역사시험에도 합격해야 했다. 이러한 엄격한 조치에 러시아계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또한 유럽연합(EU)으로부터도 비판이 표명되었다. 그 후 98년, 라투비아에서는 국민투표가 시행되어 그 결과,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91년 이후 출생한 러시아계 주민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등, 시민권 취득은 용이하게 되었다.

라투비아는 한국(조선)이 그러하듯이 과거에 소련에게 합병된 역사가 있었고, 또한 라투비아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주민은 재일과 마찬가지로 내국민이 외국인 처럼 된 사례다. 단지 러시아계 주민이 피지배지역으로 이주한 지배자계의 주민이라 한다면, 재일의 경우는 과거 지배자지역으로 이주해 온 피지배자계의 주민이라는 점이다.

재일한국인들처럼 식민지에서 종주국으로 이주해 온 사례로서 프랑스에 거주하는 알제리아계 주민을 들 수 있다. 프랑스와 알제리아는 62년까지는 종주국·식민지의 관계였고, 또한 재일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알제리아계 주민의 상당수는 조국의 국적을 유지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82년 시점에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알제리아계 주민의 수가 35%인데 비해, 재일의 경우는 일본에서의 출생률이 그 시점에서 80%를 넘었다.

또한 재일한국인들이 귀화절차를 거쳐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비해, 프

랑스출생의 외국인들은 거주에 관한 일정조건을 만족시키고 16세에서 21세 사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알제리아계의 이민 제2세대에게는 조국에 대해서도 거주국 사회에 대해서도 귀속의식을 갖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며, 프랑스국적을 보유하면서도 프랑스인으로서의 국민의식이 부족한 알제리아계 제2세대는‘서류상의 프랑스인’으로 형용되기도 하는데, 재일한국인의 경우는 한국국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국인의식이 부족한‘서류상의 한국인’, 혹은‘서류상의 외국인’으로 불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일까?

한편 일본처럼 혈통주의 국적법의 전통을 갖는 국가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독일의 경우다. 98년 말의 통계에 따르면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계 주민의 수는 210만이며, 그 4분의1정도는 쿠르드계 주민이다. 상당수는 50~ 60년대의 고도 경제성장기에‘게스트 노동자’로서 유입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며, 92년 말 시점에서 독일국적인은 2%미만이다. 독일은 일본처럼 혈통주의 전통의 국가이며 국적취득에 어려움이 따르며, 터키계 주민의 입장에서조차 터키국적의 포기를 주저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국적법은 종래의 혈통주의를 출생지주의로 고친 것으로서 부모 중에 누군가가 독일에 8년 이상 체재하면 자식은 독일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또한 23세가 될 때까지는 본국과 독일국적의 이중국적이 인정된다. 새 국적법의 시행에 따라 150만 정도의 터키주민이 독일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행 2개월 후의 보고서에 의하면 신청자의 수는 예상 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이상, 재일 한국인들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이는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보았으나, 같은 서유럽에서도 비교적 간단하게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으며 또한 각각의 외국인집단의 유래와 형태도 다양하다. 따라서 단순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재일한국인들과 같이 거주국에서의 생활이 수 십 년에 이르고 사회·문화적인 동화도도 높고, 게다가 본국과의 심리·문화적 유대는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의 귀속관계(국적)가 유지된 채로 있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생각된다[注].

영주하는 외국인이라는 언어가‘형용모순’이라고 한 것은 佐藤勝巳씨(전게서)인데 정체성과 귀속(국적)이 불일치했을 때 사람들이 으레 취하는 것은 정체성에

맞게 귀속을 바꾸는 태도이며 국적이라는 그룹멤버십은 법적 혹은 심리·문화적 제약이 없는 한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재일한국인들이 일본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귀화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귀화에 대한 제약은 언뜻 보기에 적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한국인들이 외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째서일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선은 재일한국인 자신들도 이러한 정체성과 귀속의 차이가 생기는 상황에 무관심할 리는 없다는 사실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주]

재일의 특이성에 관해 예전에 아사히신문의 사설에 다음과 같은 글이 게재되어 있었다. 이는 한일법적지위협정이 조인되기 직전에 게재된 것이며, 현재의 아사히신문의 논조와는 다르다.

‘법적지위에 관해서는, 소위 영주허가의 범위와 퇴거강제의 두 가지 점에 관해서 교섭이 이루어졌으며 일단은 협정의 가 조인이 합의되었다. 하지만 한국 측이 이 합의를 번복하고 재일한국인의 처우문제도 병행해서 한 번에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略). 한국 측이 말하는 ‘처우’는 오직 참정권과 공무원으로 되는 권리만이 제외되는 데 그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국민대우이며, 또한 영주권문제에서도 허가의 범위를 더욱 넓히도록 하는 요구가 재거론 되고 있다고 한다.

솔직히 말하면, 이러한 한국 측의 주장은 너무나도 중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후손까지 영주를 보장받으면서도 그러한 광범위한 내국민대우를 확보하게 되면 장래 이 좁은 국토에 이상하고 해결 곤란한 소수민족문제가 생기게 될지도 모른다. 출입국관리상의 일반외국인의 대우에 비해 너무나도 “특권적”인 법적지위를 향유하는 것이 과연 재일한국인들을 위한 것이 된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족감정의 미묘함과 복잡성은 지금시점에서 말할 필요도 없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장래에 화근을 남기지 않도록 법리상의 원칙을 통해서 규정짓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들은 메이지말년의 한일합방이래, 불행한 한일관계의 역사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현재, 재일한국인들의 상당수가 사실상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아래서 빈곤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또한 ‘분단국가’라는 현실에도 동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재일조선인들의 한국국적 보유여부에 상관없이 일반의 외국인과는 다른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고 생활의 안정을 바라더라도 그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다. (略)

하지만 예를 들어 한일합방이라는 역사도 지금부터 20년, 30년이 지난 후에는 그것이 대다수 일본인들에게 머나먼 하나의 과거 사실에 불과할 것이다. 독립국가의 국민인 한국인이 어째서 일본국내에서 특별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그 질문에 설명하자면 그야말로 고심해야 할

시대가 도래 하지는 않을까?(『아사히신문』 1965년 3월 31일)

결국 같은 해 6월22일, 한일법적 지위협정이 조인된 시점에서 소위‘협정영주’의 허가를 받은 대상자는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한 한국인들과 그 직계비속들로서 71년 1월16일 이전까지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일본에 거주한 한국인들과 그 자녀들이며,‘3세’이후의 법적지위 및 대우에 관해서는 25년 후에 재협의하기로 했다.‘91년 문제’는 이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재일한국인들과 재일조선인들에게는‘특별 영주권자’라는 자격이 부여되었으며 그것은‘3세’이후의 세대에게도 적용되었다. 65년 시점에서 한국 측이 요구한 것은 참정권과 공무원이 되는 권리를 제외한 내국민대우였지만 그 후, 상황은 더욱 진전되어 최근에는 지방공무원의 일부직도 재일들에게 개방되어(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이 도쿄도의 공무원이다), 참정권의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일들은 지금은 정치적 권리를 제외하면 일본인들과 거의 다른없는 권리와 의무관계에서 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선국적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 재일들은 스스로를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또한 재일이 영주외국인으로서 일본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한‘차별국가 일본’이라는 국제적 낙인도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제6장 참조). 위의 사실이 말하듯이 재일의 내국민대우는 장래에 화근을 남기는 성격의 것이었으며 위의 글은 그런 점을 예견하고 있다. 내 견해로는 위의 사실은 36년 후인 최근의 아사히신문의 재일에 관한 사실보다 제대로 된 것이다.

제3장 귀국과 귀화와 재일의 역사

재일한국인의 정체성과 귀속문제를 다뤄봤는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들의 자기수용과 자존심문제와 깊이 연관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자는 자기가 소속하는 집단의 특징과는 거의 무관하게 자신의 개성과 기술로 자존심을 살릴 수 있지만 또 다른 자는 오히려 집단에 의존해서 자존심을 얻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단과 개인의 쌍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재일의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다. 과거에 재일이 경험했던 것은 차별받고 제외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민족적인 공동체 의식에 의존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기의 개성과 기능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며, 게다가 민단(재일본 대한민국 민단)과 총련(재일본 조선인 총 연합회)간의 반목관계와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이라는 요소가 추가되어 재일들에 있어서 특유의 정체성과 귀속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져 온 것이다.

총련계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자립된 교육기관과 신용조합(금융기관)을 형성해 온 것은 이 정체성과 귀속의 어긋남을 예방하는 수단이었으며, 그들이 오늘날 민단의 참정권운동과 국적조항의 철폐운동에 비판적인 것도 그 때문이다 [注1].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 규정하는 그들은 그 '해외공민'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사회와 문화에 포섭되지 않는 생활패턴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것은 외부인들에게는 '폐쇄적'이라는 인상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곤 하지만 일본의 국가기구와 지배이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치적인 교육기관과 금융기관이 형성될 수 있다곤 할 수 없다. 일리나 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총련계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공화국(북한)의 작은 외교관이다'라는 자각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일본사회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위법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어린이들에게 일본은 외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그들을 (일본국가의)법앞에서의 순종적인 인격으로 만들어 간다. 총련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이라는 입장에서 사실상 일본에서의 참정권의 주장 등에 대해 비판적이며 1980년대의 외국인등록의 지문날

인 거부운동이 한창이던 때에도 총련계 조선인들은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총련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보다도 '조국통일',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의 확립' 등이 선결문제이다. 결과적으로는 자기관리기능을 확실히 갖춘 이 정도로 다루기 쉬운 외국인 조직은 일본 법무성의 입장에서 달리 없다 해도 좋을 정도다.(略)

총련은 1993년에 교과서의 개편을 계획했다. 그에 따르면 초·중급의 과정에서 '김일성주석의 혁명역사' 등의 사상교육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교육은 폐지된다. 이는 총련의 '1조 학교'에 준하는 대우를 요구하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으며 문부성이 지도하는 교육내용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권리·혜택을 위해서는 국가 관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희생을 해야 되며 북조선의 국가권력의 개입이 지금보다도 느슨해지는 대신에 일본정부의 국가권력의 개입이 부조·지도라는 이름 아래 강화된다는 것도 있을 법하다. 그것은 총련과 일본국가 사이에 현존하는 '공존의 구조' 내부에서 권력관계의 비대칭성을 증폭시킨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공존'이 아닌 '의존'으로도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조총련의 조선어교육」 존·C·마하 외 편저 『새로운 일본관·세계관을 향해』 국제서원 수록, 1994년)

[주1]

참정권운동에 반대하는 총련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표명되어 있다.

현재 재일본 대한국민단 등 일부가 요구하고 있는 '지방 참정권' 문제는 재일동포를 일본 사회로 동화시키도록 이끄는 위험한 것입니다.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근거를 추적해보면 '일본에 정주하는 주민들'이다. 즉 국적이 다를 뿐, 일본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일본주민'(민단중앙단장의 발언)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일본주민'인 이상,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지방 참정권으로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국제인'으로서의 요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略) 스스로의 민족적 존엄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재일동포는 일본에 거주함에 있어서 일본의 법을 지키고 일본의 사회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주권국가인 조국의 재외공민으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略)

민족의 주체성이 결여된 '일본 주민론'과 '국제인'의 이름을 빌린 '참정권 획득' 운동은 일본이 과거 일제시대에 '내선일체'를 주장하며 반민족적인 일부 조선인들에게 '청원'하도록 시켜서 '선거권'을 부여한 치욕스런 사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재일본 조선인 총 연합회 「재일동포의 "지방 참정권"에 반대한다」 1996년 4월)

지방공무원의 채용문제에 관해 조총련중앙부위원장인 오형진씨의 다음과 같은 담화가 있다.

국가기구이든 지방공공단체이든, 일본의 공권력행사와 관계된 공무원직으로서의 재일동포의 취직은 본질적으로는 일부세력이 주장하는 '참정권'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내정간섭이 된다.

특히 우리들은 외국인의 공무원채용문제가 재일동포의 민족성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동화

를 촉구한다는 사실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사실로부터 알 수 있듯이 총련은 일본의 공권력행사에 관계되는 '일반직' 공무원직에 재일동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요구한 적도 없었고 향후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외국인의 일본지방공무원 채용문제에 관해」 1996년 5월21일)

모두가 총련의 공식적 태도표명으로 봐도 좋겠지만, 이와 비슷한 태도는 70년대 초까지는 총련 뿐만 아니라 민단에서도 볼 수 있었다. 佐藤勝巳씨는 히타치(日立)재판투쟁(70~74년, 제 4장 참조)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기재했다.

히타치(日立)투쟁 가운데 무엇이 곤란했는지 물어온다면 민족단체, 특히 총련이 우리들의 운동을 가리켜 동포를 일본사회에 동화시키는 '네오동화주의' 운동이라며 '비난'했던 일이었다.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운동에서 두려운 것은 투쟁 상대방의 공격보다도 원래 아군이라고 믿었던 세력으로부터의 공격이다.

'히타치(日立)에 근무해서 어쩔 셈이나? 재판을 해서 동화한다는 게 제정신인가?' 이와 같은 의견은 총련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재일 1세로부터 나왔다.

'박종석군 후원회' 한국인 모임의 책임자이며 재일 대한기독교청년회 전국협의회 회장이기도 했던 최승구씨는 2세인 이 협의회의 한 회원으로부터 히타치(日立)에 관련된 것은 동화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회장직에서 해임되는 사건까지 있었다. (略)

나의 견해로는 일본기업 취업에서의 문호개방과 또한 사회보장의 적용에 가장 강하게 반대한 것이 1970년대 전반의 민족단체내부의 1세 들이었다. 당사자들이 동화라고 말하며 반대하는데, 일본정부가 술선해서 제도적 차별을 철폐할 리가 없다.(전계서)

정체성과 귀속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능동적이며 극적인 사례는 재일 조선인들의 북한귀국운동에서 알 수 있다. 59년부터 84년 사이에 귀국한 재일조선인들의 수는 최대 9만3천명이다. 가장 높았던 60년과 61년의 2년 동안에는 총 7만 명이나 되는 재일조선인들이 고도경제성장국가인 일본을 떠나서 '지상낙원'으로 선전된 북한으로 귀국했다.

'정치적 엑소더스(탈출)'등으로 조차 허용되는 이러한 집단귀국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재일조선인들을 밀어내는데 공헌한 차별과 빈곤을 지적하는 한편, 재일조선인들을 유인하는 데 공헌한 북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귀국자 자신들의 의사와 선택이라는 뉘앙스도 있었을 것이다. 즉 여기에는 정체성과 귀속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일조선인 스스로의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이며 그런 상황에 대해 조직이 무관심했을 리도 없다. 귀국선박제1호(975명)가 출항하기 약 4개월 전인 59년8월, 총련의 제19회 중앙

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행한 한덕수 의장의 연설에는 귀국이 단지 생활고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부분이 있다.

지금은 우리 인민들이 4천년 동안이나 꿈꿔온 인민들이 화합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상 낙원을 실현하게 되었다. 귀국하는 동포들에게는 멸시와 박해를 받는 이국에서의 생활이 아닌, 국가의 주인공으로서 참다운 자유생활이 기다리고 있다. 일용직을 하고 있는 동포에게는 창조적 노동에 참가하는 길이 열렸다. 우리 학생들은 그 재능과 희망에 맞게 공부할 수 있다. 우리 여성들은 지금까지와 같은 생활고와 봉건제와 박해의 삼중고로부터 해방되어 평등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귀국하는 동포들에게는 지금까지와 같은 불결하고 누추한 건물이 아닌 도시의 아파트와 농촌의 전원주택이 기다리고 있다. 출항이 얼마 안 남았다. 손에 손을 잡고 그리운 조국으로 돌아갑시다. 승리를 다짐하며, 귀국희망자의 대열을 확대하고 귀국준비에 들어갑시다. 당분간 우리들 모두를 귀국사업의 성과 높은 추진을 위해 귀국자 대열을 강화하고 투쟁해야 한다.

하지만 61년이 되자, 귀국희망자의 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또한 1월 말에 북한 측은 일본에 독감이 확산된다는 등의 이유로, 귀국선의 배급을 4월 중순까지 중지했다. 이것은 귀국사업에 전력을 기울인 총련조직에 동요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들고 일어난 것이 한의장이었다. 한의장은 신년 초부터 규슈(九州)、야마구찌(山口)、히로시마(広島) 등을, 4월에는 가나가와(神奈川)、도쿄(東京)지방의 동포를 방문하고 또한, 규슈(九州)、시모노세키(下関)、가와자끼(川崎)、도쿄(東京)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는데, 그 어느 때 보다도 격분한 어조로 ‘귀국’의 여부를 두고 망설이는 재일조선인들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1월18일, 규슈(九州)지방의 조선인 대회에서의 연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 재일동포들 앞에는 두개의 생활방도에 관한 선택사항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개는 공화국으로 귀국해서 당당하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자신의 고국에서의 희망이 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길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생활타성에 젖어서 그대로 굴욕적인 이국생활을 희망도 없이 지내면서 ‘일본귀신’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장명수著 『배신당한 낙원』(講談社,1991년)에서 인용된 것을 재 인용한 것이지만 장씨(前 총련니가타(新潟)현 본부 부위원장)자신은 한의장의 위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한의장의 발언은 우리 재일동포들에게는 의미심장한 것이었다.‘지금까지의 생활타성’은 일제시대의 생활을 의미하며, 동포들에게는 그 이상의 굴욕적인 말이 없다.“정곡을 찌르는 표현”이며 또한 위협적인 표현이었다. 이를 전후로, 한의장은 후쿠오카(福岡)시,오쿠라(小倉)시, 오노타(小野田)시, 히로시마(広島)시 등의 동포들의 밀집지역을 방문하고 귀국을 촉구했다. 50호 정도의 동포들이 밀집해 있던 후쿠오카(福岡)시 교외의 나지마(名島)지역을 방문한 한의장은 토목작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던 동포들의 거친 손을 붙잡고,‘흙을 팔바엔 조국의 흙을 팝시다. 그것은 고귀한 기술입니다’라며 귀국을 권했다.

그의 이러한 호소에 이 지역의 동포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며 귀국을 결심했고 그해에는 50가구에 가까운 거의 모든 동포들이 귀국했다.

그 후, 한의장과 총련 중앙회는 더더욱 재일동포의 귀국열기를 부추기기 위해 귀국 슬로건을 만들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유포시켰다. 이 슬로건은 재일동포들의 모든 계층을 향해 호소한 26개 항목에 이르는 것이며, 그 기본 슬로건은 ‘60만 동포들이여! 통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공화국으로 귀국해서 경제건설 7개년계획에 우리 모두 함께 참가해서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라는 것이었다. (略)

이것이 제1슬로건이며 이하‘이국땅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동포들이여 공화국으로 빨리 돌아와 보람 있는 일터에서 있는 힘껏 일해 봅시다’,‘살아갈 길이 없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동포들이여’,‘직업소개소를 전전하는 동포들이여’,‘업신여검과 멸시받는 고물상을 하는 동포들이여’라고 슬로건은 계속된다.

이와 같이 당시 재일이 놓여진 모든 경우를 상정해서 일일이 열렬하게 귀국을 호소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동활동을 개시해 갔다.

귀국자들은 1960년에 4만9천명이었지만 61년에는 반감해서 2만3천명으로 되었다. 조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그들은 결국 출신성분[주2]으로 인해 엄격히 제한된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북한행은 일생일대의 실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아니, 귀국자들의 상당수는 승선한 첫날부터 그 사실을 깨달았는지도 모른다.1960년 6월 24일 출항한 귀국선에 승선한 정기해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귀국선이 출항하자마자 니가타(新潟)에서의 축하분위기는 일변하여 정적마저 감돌았다. 선박의 갑판에 머물러 있던 귀국자들의 시야에는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져 가는 니카타항(新

灣港)이 보였다. 그래도 우리들은 니가타(新潟)쪽을 계속해서 응시했다. 일본에 대한 미련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반면, 가슴 한구석에서는 북한에 대한 불안이 점차 쌓여 갔다. (略)

얼마 후 귀국자들 특히 젊은이들이 조국에 대해 크게 낙담하게 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이라 해도 저녁식사가 형편없었던 일이었는데 우리들은 귀국선 안에서 처음 맞이하는 저녁을 생략한 채 공복을 참아야 했다. (略)

눈앞에 '차려놓은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도 비정상적인 이야기이다. 하지만 우리들 귀국자들의 대부분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상한 악취가 풍기는 식당에서, 게다가 불쾌한 마음도 들었기 때문에 귀국선승선 첫날의 저녁식사를 생략하게 된 지경에 이른 것이다. (略) 젊은이들 중에는 '이런 걸 어떻게 먹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자들도 있었다.

승선하자마자 귀국자들은 잇따른 충격을 받았다. (略) 니가타(新潟)를 출발한 지 몇 시간도 채 안되어서 이미 육체적, 정신적으로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였다. 더구나 배 멀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기저기서 구역질이 올라와서 구토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밖으로 나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었다. (略)

너나 할 것 없이 입에 담은 말은 '설마'라는 말뿐이었다. '이런 리가 없어', '지금부터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의문과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그런 와중에 점차 말 수도 적어지고 말문을 닫아 버려서 갑판위에는 건디기 힘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귀국선』 문예춘추, 1995년)

한편 52년부터 99년에 걸쳐서 한국·조선국적을 버리고 일본국적을 취득한 자의 수는 약 23만 명이었다. 귀화 인구는 90년대에 들어와서 급증했고 특히, 95년 이후는 연간 1만 명 정도다(표 참조).

보다 행복한 생활을 위해 우리들은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바꿨어야 했을까?

귀국과 귀화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언뜻 정반대의 해답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체성과 귀속 간에 있는 차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동기에 있어서 양자는 이해가 일치되고 있다. 귀국이 귀속에 맞추어 정체성을 바꾸려 하는 것이라면 귀화는 정체성에 맞추어서 귀속을 바꾸려는 시도이며, 여기에는 재일들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한 시행착오의 역사가 있다. 그것은 지금 와서

년	귀화 허가자 합계		본국이 한국· 조선의 비율(%)	불허가 자 수	년	귀화 허가자 합계		본국이 한국· 조선의 비율(%)	불허가 자 수
		본국이 한국· 조선					본국이 한국· 조선		
52	282	232	82.3	219	77	5,680	4,261	75.0	2,019
53	1,431	1,326	92.7	568	78	7,391	5,326	72.5	1,094
54	2,608	2,435	93.4	1,223	79	6,458	4,701	72.8	1,527
55	2,661	2,434	91.5	2,332	80	8,004	5,987	74.8	1,124
56	2,547	2,290	89.9	2,385	81	8,823	6,829	77.4	874
57	2,582	2,312	89.5	2,909	82	8,494	6,521	76.8	792
58	2,594	2,246	86.6	2,896	83	7,435	5,532	74.4	458
59	3,076	2,737	89.0	3,020	84	6,169	4,608	74.7	426
60	4,156	3,763	90.5	2,955	85	6,824	5,040	73.9	604
61	3,013	2,710	89.9	2,933	86	6,636	5,110	77.0	457
62	3,614	3,222	89.2	333	87	6,222	4,882	78.5	505
63	4,100	3,558	86.8	2,519	88	5,767	4,595	79.7	539
64	5,445	4,632	85.1	1,217	89	6,089	4,759	78.2	399
65	4,088	3,438	84.1	1,186	90	6,794	5,216	76.8	274
66	4,735	3,816	80.6	1,620	91	7,788	5,665	72.7	223
67	4,150	3,391	81.7	2,216	92	9,363	7,244	77.4	162
68	3,501	3,194	91.2	1,978	93	10,452	7,697	73.6	126
69	2,153	1,889	87.7	841	94	11,146	8,244	74.0	146
70	5,379	4,646	86.4	1,416	95	14,104	10,327	73.2	93
71	3,386	2,874	84.9	666	96	14,495	9,898	68.3	97
72	6,825	4,983	73.0	811	97	15,061	9,678	64.3	90
73	13,629	5,769	42.3	684	98	14,779	9,561	64.7	108
74	7,393	3,973	53.7	585	99	16,120	10,059	62.4	202
75	8,568	6,323	73.8	1,016					
76	5,607	3,951	70.5	1,329					

생각하면 소득 없고 언쟁과 뒤엉킴의 역사였는지도 모르지만, 거기에는 절실함이 있었으며, 그것은 전 세계의 다양한 민족주의적인 그룹이 경험해 온 시행착오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주2]

출신성분은 각개인의 가계를 3대 위까지 거슬러 올라간 출신계층과 직업에 의해 결정된다. 북한에서는 68년부터 70년에 걸쳐서 실시된 '주민등록·성분조사사업'에 의해 전주민이 '3계층·51성분'으로 분류·등록 되었다. 3계층은 '핵심계층', '동요계층(기본계층)', '적대계층(복잡계층)'을 가리키는 것으로, 70년대 말의 경우, '핵심계층'이 27% 인데 비해 '동요계층'이 22%, '적대계층'이 51%다. '핵심계층'과 '적대계층'을 구성하는 각 '성분'을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핵심계층’=‘혁명 유가족, 전사자 유가족, 애국열사 유가족, 피살자 유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순직자 유가족, 영예군인, 조선노동당원, 대물림노동자, 대물림소작농, 대물림빈농, 해방 후의 사무원, 해방 후의 지식인’이며, ‘적대계층’=‘지주출신, 부농출신, 자본가 출신, 일제시대의 지식인, 한국 정부기관의 복무자, 탈북자의 가족, 해방 후의 입북자, 조선노동당으로부터의 제명자, 반당·반혁명분자, 반당·반혁명분자, 반당·범법자의 가족, 체포·투옥자의 가족, 정치수용소 출소범, 간첩 관계자, 경제사범, 안일·방탕한 자, 민주당원, 천도회의 청년당원, 기독교(신교)신자, 가톨릭신자, 불교신자, 접대부와 미신신봉자, 중국으로부터의 귀환자(당원은 제외), 일본으로부터 온 귀환자(입당원 제외), 친미주의자’이다. 이러한 ‘성분’은 주민등록 대장에 기재되며, ‘적대계층’에는 일상적인 감시가 따르며, 진학, 군 입대, 취직, 결혼, 주택할당, 의료, 입당 등에서는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된다. ‘일본으로부터의 귀환자’인 경우, ‘동요분자’나 ‘적대분자’로 취급받게 된다(NK회편 『북한의 Q&A100』 亞紀書房, 1994년).

이러한 교포의 경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와 기록이 있다. 한국의 사단법인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이 발행하는 ‘뉴스레터’(2000년 6월호)에 ‘김원현일가의 탈북수기’를 표제로 한 수기가 게재되었다. 그는 인민군 총참모부 공병국산하인 외화획득지도원으로 신의주 기지에 배치되었다. 미국에 친척이 있는 그는 ‘출신성분’으로 따지면 원칙적으로 이런 직위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했을 테지만 경제난이 악화된 결과 당국이 능력주의로 전환하였고 뇌물의 효력도 발휘되어 그런 직위에 오른 것이다. 그의 장남은 일본이 출생지인 귀국동포의 딸과 결혼했다.

‘음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품과 석탄, 전기도 부족했다. 쓰레기장에서 음식물을 뒤지고 있었다. 정류소 주변과 암시장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는 거지, 노숙자, 매춘부, 암달러상, 부랑자 등의, 어두운 세계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는 내 가족이 이미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북한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식량난과 물자난은 우리일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장남은 학교의 교원이었는데 그만두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셋째 아들은 맹장수술을 받았을 때 항생제를 투여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국방체육단에 복귀 못한 채 집에서 허송하고 있었다.

셋째 아들은 체격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중·고등학교 때 언제나 반에서 1,2등을 했다. 그런 아이가 무위도식하고 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어쨌든 건강을 되찾게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아들을 평양적십자병원에 데려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시키지 못했다. 몇 군데 신경 쓰이는 곳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뇌물을 쓰면 진료는 받을 수 있었겠지만 적십자병원에 과연 훌륭한 설비가 갖춰져 있을 것인가? 큰 병원이지만 약품이 부족하고 환자는 자신의 약을 자력으로 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정도의 치료를 받을 바엔 탈출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셋째아들의 건강문제와 함께 장녀의 결혼문제도 있었다. 결혼적령기인 딸을 북한에서 데려나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여성이 북한에서 자녀를 낳고 생활하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식수도 여성이 날라야

하며,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도 여성의 몫이다.

가장 힘든 것은 사윗감을 고르는 일이다. 북한에서는 엇비슷한 성분끼리 결혼하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우리 일가와 같은 경우는 친척이 재미 혹은 제일인 가정에서 선택해야 한다. 친척이 제일인 가정도 80년대까지는 생활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 일본의 친척들도 원조에 지쳐버리고 만 듯 했고, 세대교체가 되면서 원조액도 상당히 줄어들었다. 신의주에서도 제일가정의 생활상은 중국에 친척이 있는 가정과 다를 없었다. 머지않은 장래에는 원조도 끊길지 모른다고 생각이 들자, 자녀를 그런 곳에 시집보낼 수도 없었다.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은 그들의 장래문제였다. 그들도 역시 '적성분자'라는 꼬리표가 붙여진 채, 일생을 보내야 한다(略). 이것저것 생각한 끝에 나는 탈출 이외에 길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하기로 결심했다. (가아이소(河合聡)역)



제4장 왜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다곤 하지만 왜 재일한국인들은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을까?

재일한국인들의 생활이 국적에 의해 규정되는 부분이 적어졌다곤 하지만 일본에는 인접국과 그 국민들을 멸시했던 역사가 있으며, 이러한 의식은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여전이 자리잡고 있다. 단순한 멸시로 보기에 는 보다 복잡하긴 하지만 그 인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감정은 재일한국인에게도 공유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본국에 대한 귀속의식과 애착이 점점 더 희박해지는 상황에 있다. 재일한국인이 한국국적을 갖는 것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혹은 공직진출의 기회로부터의 제외를 의미하며, 외국인으로 남아있는 이상 일본국민과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재일한국인이 한국국적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자신의 운명을 본국정부에 위탁한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본국정부가 일본과의 외교교섭에서 재일한국인들을 이용할 위험을 낳는 것이기도 하다.

재일한국인들이 이와 같이 한국국적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몇 가지 불리함과 불편과 모순된 상황들이 있으며, 그로인해 무엇보다도 재일한국인들이 불투명한 존재로 각인되어진다. 재일한국인들은 앞으로도 일본이 삶의 터전임을 알고 있으며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적을 유지하는 까닭은 어째서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재일한국인 사회에는 귀화를 금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재일한국인들의 민족주의와 대항주의와 함께 일본인들의 다문화주의와 인권주의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 ②재일한국인들이 귀화를 주저하는 것은 귀화에 대한 평가 때문이라기보다는 귀화에 의해 초래되는 부작용과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 ③외국인의식이 희박한 재일한국인들에게는 귀화절차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생기기 쉽다.
- ④한국국적을 유지한 채로 생활을 해도 지장이 없는 상황 탓이기도 하다.
- ⑤정체성과 귀속의 불일치라는 상황은 재일한국인들의 귀화에 대한 준비성을 높이는 것이었지만 80년대 이후의 재일한국인들의 운동이 선택한 것은 국적

문제를 보류하는 방법이었다.

⑥재일한국인들의 ‘모라토리엄 인간화’가 국적과 국적이동에 대해 무관심을 가져왔다.

이하는 각각에 대한 약간씩의 설명이다.

금기와 그것을 지키는 것

①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귀화를 금기시 하는 경향은 재일한국인들의 민족주의나 대항주의와 함께 일본의 다문화주의와 인권주의에 의해 유지되고 있지만 우선은 귀화금기는 무엇인가에 대해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박정호씨는 재일의 귀화금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우리 재일한국·조선인들 간에는 특히 민족활동가들 간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랫동안 국적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재일동포1세 중에서 아 니, 2세 중에서조차 귀화하는 자는 민족을 배신한 자라며 비난하는 듯한 풍조가 있었다. 아무리 생활하는데 편리하다해도 예전에 우리민족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 일본의 국적을 취득 한다는 것은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1세대 중에는 뿌리 깊이 남아 있었고 나와 같은 2세대들 중에도 적잖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과연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나쁜 행위인가? 그보다도 이민족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적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그 나라가 싫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역사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개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 해가는 것과 그것은 별개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들은 정치가도 역사학자도 아니다. 우리들이 보통사람으로서 상식적인 방법을 선택 하는 것이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일까? 실은 우리 재일한국인들이 특히,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일본국적을 기피하는 진정한 이유로는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보다도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단순히 자기 자신이 납득되지 않는 그런 막연한 감정은 아닐까?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확고한 신념에 바탕을 두지는 않았던 듯하지만 어쩐지 주변 분위기가 그렇게 만든 것 같다. 그리고 일본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민족의 자존심은 지킬 수 없다는 식의 논의는 이상하다. 일본국헌법은 사상신조,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본국의 국적을 갖는 것 보다 훨씬 자유롭게 민족적인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재일한국인의 국적문제재고」 『현대코리아』 1997년 10월호)

박정호씨가 말하듯이 재일사회에는 귀화를 금기시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귀화자

를 비난하는 듯한 풍조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왜 나쁜 행위일까? 그것에 대해 명확히 기록된 것은 적지만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재일한국인들이 한국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민족적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지금 다시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식민지시대의 잔재인 창세기개명에서조차 해방되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적 주장을 위한 국적이 필요하다.

민족명을 사용해도 귀화를 인정하는 현실 속에서 일본에서도 민족명을 사용할 수 있다면 국적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논의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민족명을 사용하지 않는 재일사회에서는 민족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저항 개념으로서의 국적이라는 의미가 강하다.(略)

또 한 가지 이유는 21세기 사회에서 일본국내의 소수민족이라는 존재로만 남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21세기는 틀림없이 국경 없는 사회가 되며 유럽이 EU(유럽연합)로 통합되어 가듯이 일본도 한국도 국민국가개념은 사라져 갈 것이다. 국경 없는 사회로 되어간다고 해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소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 선구자가 재일동포이다(김경득 「지금 국적을 보유하고 살아가는 의미」 『통일일보』 1999년 2월17일)

1990년대인 지금 재일조선인들은 ‘동화’를 강요하는 일본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고립·분산되어,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에 고심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주’의 현실을 인정하고 ‘재일’ 혹은 ‘조선인’,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즉 재일조선인들의 상당수는 현재,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일본사회의 부조리와 투쟁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일’로 살아가는 것은 동시에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며, 조국통일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일’은 ‘북’과 ‘남’, ‘북’과 ‘일본’, ‘남’과 ‘일본’의 가교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시민’이며 또한 ‘통일조선’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예를 들어 ‘불우한 의식’에서 출발해도 ‘재일’은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자유·평등·박애의 ‘보편성’을 추구해가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윤건차 『여러분과 조선』 이와나미(岩波)주니어新書, 1991년)

재일동포들 가운데 일본이 출생지인 세대들 대다수는 이미 언어, 생활문화 등의 민족적 특성을 상실해도 어떻게 해서든 ‘국적’만은 민족적 정체성의 버팀목으로 삼고 있다. 바꿔 말하면, ‘국적’이야말로 재일동포들이 일본의 ‘단일민족’으로의 흡수·동화로부터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온 마지막 보루이며 1세대들이 지켜온 귀중한 유산이다.

물론 귀화해서 일본인과 완전한 평등을 획득하는 삶의 방식도 있다. 하지만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의무에 걸 맞는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누릴 수 있을까?
이는 재일동포의 세기적 도전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강재언 「재일동포의 장래 상」 『통
일일보』 1995년8월15일)

위의 인용문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언제나 공통되는 점은 피해자적인 성질과 희생자적인 성질을 재일의 사회적 기호와 동일시해서 서술하는 태도이다. 첫 번째 사례인 김경득씨(변호사)의 경우 재일한국인의 피해자적인 성질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전반부이며, 후반부에서는 재일한국인이 국경 없는 시대의 선구자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사례인 윤건차씨(神奈川대 교수)의 글에는 자기기만적 내용이 무색할 정도로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한다.“‘재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본사회의 부조리와 투쟁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지만 이는 뻔한 위선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인 강재언씨(하나조노다이(花園大)교수)의 글에서의 국적이야말로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부분은 용감하지만 공허하기 그지없는 설득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민족주의와 대항주의의 이념은 재일지식인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지만 반드시 설득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의 이념은 차별과 배제에서 오는 소외감에 대항하기 위한 공동성의 감각을 원점으로 하지만 지금의 재일한국인들에게는 차별과 배제의 체험 그 자체가 더 이상 실감되지 않고 있다. [注1]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일본의 공생론자들과 인권주의자들 혹은 인정주의자들 사이에서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며 중요한 사항은 오히려 이러한 일본인들로부터의 메시지인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재일한국인들에게 귀화따위는 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국적으로 살아가라는 성원을 보내고 있다.

‘외국인’참정권문제는 일본의 미래에 관한 절실한 사상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그것에 의해 일본을 어떻게 열린 사회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나의 결론은 ‘외국인’에게 완전한 참정권을 인정하고 ‘외국인’이라는 말이 의미를 갖지 않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도 자유롭게 만들어갈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었다. 헤겔이 말하는 주인과 노예와의 상호종속관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과 타인을 차별함으로 인해 인간은 타인의 존재 없이 자신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절대적인 구속아래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차별은 차별하는 측도 자유를 빼앗긴다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국정차원에서든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든 공무원취임권을 포함한 '외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차별에 의한 상호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이다. 게다가 의무와 권리의 상관관계를 논하는 근대법의 '당연한 법리'의 관점에서 보는 한 '외국인'의 참정권을 부정하는 근거는 없어질 것이다. 만약 그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될지의 결정에 참가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질지 확인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의 사기에 가까운 것이며 이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加藤節 「국가를 개방시킨다는 것」 『아사히신문』 1996년 5월15일 석간)

일본사회는 오랫동안 재일한국·조선인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해 왔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보다 근원적인 민족차별이 저변에 흐르고 있다. 최근에는 운동의 성과에 의해 국적차별은 미약하나마 개선되고 있다. 또한 일본국적을 가진 재일한국·조선인들도 늘었다. 하지만 일본국적의 취득은 차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적차별에서 민족차별로 형태를 바꾼 차별이 보다 뚜렷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민족차별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일한국·조선인 측에서도 일본인 측에서도 차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지 않을 결의 하에서 자신이 어느 민족에 속하며, 그것은 일본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관찰된 생활방식이 필요하다. 민족문제의 바른 이해는 다민족·공생사회를 만드는 기본이며 개개인의 기본적인 도덕심이기도 하다.(江橋崇 『고향을 만드는 거리』 KMJ연구센터, 비디오해설서)

川崎시가 직원채용에서 국적조항을 없앤 것은 좋아요.(略) 다른 지자체도 국가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주외국인들의 지방참정권조차 이번 공소심판결에서 그다지 위헌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확실히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면 된다.

나의 생가는 생사제조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보일러관리를 하는 두 명이 한국인이었다. 그들 모두 더부살이였으므로 나도 같이 끼어들어 자며 귀여움을 받았지.

그래서 관동대지진(1923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독을 풀어 넣다니 틀림없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略)

일본에서 태어나서 교육받은 재일 3세 혹은 4세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한다면 그들의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 전에 일본국적을 취득하라’는 등, 속 좁은 소리를 한다면 일본에 있어서도 손해다.(泰野章談 「특집 · “재일” 르네상스」 『論座』 1996년9월호)

위에서 소개한 글이 재일한국인들이 한국국적을 유지시키는 데에 대한 도덕적 지지라고 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 즉 귀화에 대한 도덕적 지지는 일본사회의 경우 놀랄 정도로 적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공생론자들이나 인권론자들은 외국국적을 유지하는 자들에게는 도덕적 지지를 보내더라도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행위에는 냉정하며, 그 긍정성 보다는 부정성을 언급하는 일이 많다.

[주1]

민족주의 그룹의 공동성의 감각을 동기로 한 민족주의에도 80년대 이전의 것에는 보다 명료한 성격이 있었다. 79년 재일한국청년회에 의해 일본 내의 다섯 곳에서 여름캠프가 개최되고 이때 2천 2백 명이 넘는 참가자가 있었음을 전하는 민족언론지의 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 지역의 캠프장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마련되어있었다. 강연회, 캠프파이어, 운동회, 민속춤, 각 현의 노래자랑, 불꽃대회, 영화, 콘서트, 가요공연, 디스코대회,해수욕,하이킹,연극공연,담력테스트……등, 각 지구 모두 숙고한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그것은 참가자들이 조금이라도 즐겁게 지내도록, 가능한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도록, 배려한 결과였다.

모든 대회장이 동포청년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처음으로 참가한 사람들도 작년에 참가했던 사람들도 학생들과 근로청년들도 동포(진정한)라는 용광로 속에 녹아들었다. 웃음이 가득했다.(略)

‘내성적인 내가, 지금까지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수줍음도 없이, “아! 난 한국인이구나!”라고 실감 할 수 있었습니다’(東京에서 온 여성(22)), ‘처음으로 이런 동포들의 모임에 참가했지만 자신도

이상할 만큼 감격했습니다.’(滋賀에서 온 여성(23))이와 같이 모두가 다시 한번 동족이라는 연대감을 강하게 느꼈다. ‘뉘라 설명할 수 없는 개방감. 일본인들과 있을 때는 절대 느낄 수 없었다. 이런 차이는 무엇일까’(北海道에서 온 남성(23))- 강력한 민족적 일체감이 참가자 전원을 감쌌다.

이것은 혼자서 고민하는 한 절대로 맛 볼 수 없는 경험일 것이다. ‘똑 같은 체험과 고민, 번민을 공감하는 동료들과 알게 되는 것이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이었다니’ 참가자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인이었기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스런 기억과 불안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에 믿을 수 없는 감각이 전신을 휘감았다.(『통일일보』(1979년8월16일))

위의 행사가 열린 것은 79년이였다. 재일한국인들의 사회적상황이 크게 바뀌기 직전 풍경이었다. 그 후 재일한국인의 상황은 크게 바뀌어서, 차별과 배제로부터 오는 소외감에 대항하기 위한 공동성이라는 감각 그 자체가 퇴화되고 만다. 정치적 권리를 제외하면 재일한국인들이 일본인들과 거의 같은 사회권을 향유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귀화의 대가

재일한국인사회에는 귀화를 금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재일한국인들이 한국국적을 유지한 채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일본사회로부터의 도덕적 지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재일한국인들은 앞으로도 일본이 생활의 근거지라는 것과 일본에서 생활하는 한은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사적인 대화와 이야기에서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혹은 귀화에는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등의 말을 하는 재일한국인들은 적지 않으며, 실은 그러한 이야기들은 상당히 이전부터 어느 정도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어지기도 했다. 어느 민족지의 기사는 80년대 전반의 오사카지역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사카의 유력인사들이 수백 명이 모인 올해의 신년 친교행사장에서 한국오사카JC의 박회장은 인사말에서 ‘귀화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 내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발언했다. 시대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결코 ‘적극적인 귀화론’은 아니지만, ‘용기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인 1세대들이 많았다. 또한 ‘귀화=민족배반자’로 여기는 것은 옛 이야기가 된 것이다.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한은 결코 귀화시키지 않겠다. 하지만…….’이라는 재

일 1세. ‘현시점에서는 귀화에 절대 반대한다. 하지만 타인과 자신의 장래까지 “절대”라는 말을 사용할 자신은 없다.’는 젊은 상공인. 아들들의 귀화에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할 수 없지.’라며 어깨를 축 늘어뜨리는 할머니. 다소나마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자들로서 귀화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사카(大阪)의 아사히(旭)지부에 들렀을 때 박할아버지와 만났다. 일본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부자의 연을 끊고 소식이 두절된 아들. 동포사회에 관심도 없고 조총련을 지지하는 것도 아닌데 ‘조선’국적 인으로 방치되고 있는 아들, 딸들. 이로 인해 여권 신청절차가 까다롭다. 자식들은 모두 귀화를 원한다고 한다. ‘저런 어리석은 것들. 누구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고생해왔는데’ 강한 어조였지만 동요되는 듯 말하는 75세의 할아버지.

그 지부의 사무부장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호적등본을 일본어로 번역해 주세요.’라고 부탁해오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사용 목적을 물어도 확실히 말해 주지 않는다. 지금은 ‘귀화’라는 말을 서로가 전혀 입에 담지 않은 채, 사무부장은 그 부탁을 들어준다고 한다. 의뢰인이 돌아가고 나면 언제나 젊은 여직원을 상대로 귀화논쟁이 벌어진다고 한다. 매번 이야기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

布施지부의 사무소문에서 현관문이 내려진 마감 이후의 시간에 청년회지부의 회장직에 있는 남자직원과 잡담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사무실 전용문으로 손님이 들어섰다. 호적등본을 떼고 싶다고 했다. 그의 반응은 ‘봉사하는 민단’ 직원으로써 당연한 업무이다. 하지만 사용 목적을 묻자, 그 삼십대 손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귀화하려고요’라고 말했고,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 후 ‘그것은……민단으로서는……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이라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는 ‘귀화절차를 도와주는 것은 ‘봉사’가 아니지’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듯 쓸쓸한 표정이었다. 그 손님으로 인해 같은 세대 동포청년들의 고뇌를 엿볼 수 있게 된 것 같다’(「오사카·귀화백경」 『통일일보』 1980년 3월 8일)

강신자씨의 『아주 평범한 재일한국인』은 재일한국인을 테마로 한 책으로는 비교적 폭넓게 읽혀진 책이며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정말 귀화해 버릴까하고 마음 한 구석에서 속삭여본다. 일본인 친구들도 가볍게 귀화를 권장한다. 하지만 좀처럼 대답할 수 없다. 민족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재일한국인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적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러 가지 사고방식과 감정이 뒤엉킨 재일한국·조선인사회, 거기에 대치하고 있는 일본사회. 그 뒤엉킨 실타래 속에서 괴로워한다. 귀화라고 하는 행위가 재일한국인·조선인들에게 일종의 떳떳치 못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본인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확실하게 내린 결론이라 해도 차가운 사회적 시선을

느낄 때가 있다. 귀화한 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재일한국인·조선인들의 반응과 받아들이는 측인 일본의 반응 그 어디에도 차가운 분위기가 느껴진다[주2]. 나는 자신과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부모·형제가 나로 인해 쓸데없는 말을 듣게 된다면 곤란하다.(『아주 평범한 재일한국인』 아사히신문사, 1987년)

[주2]

어느 좌담회에서 西部蓮씨의 강신자씨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발언은 그러한 식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다른 정감어린 표현이다.

강 선생님, 저는 돌아가신 中上健次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피차별 부락 출신이지요. 中上도 그 사실을 평생 동안 언급해왔습니다만.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 나야말로 진짜 일본인이다. 다른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것을 꼭 강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정한 일본인입니다’라고. 제게 말할 기회를 주신다면, 국적이야말로 본인의 의사로 취득해야하며, 개념 없이……, 아니 그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했네요.(「특집·“재일”르네상스」 『論座』 1996년9월호)

하지만, 西部씨의 보기 드문 발언에 대해 강신자씨는 답변을 피하고 있는듯하다. 적어도 기사내용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강신자씨로부터의 발언이 없었다.

80년대의 글을 두 가지 소개했는데, 그 이후 90년대에 들어와서 귀화자의 수는 증가했고 특히 그 후반이 되자, 귀화자의 수는 연간 1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 52년부터 99년까지 한국·조선국적에서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의 수는 약 23만 명이다. 이에 비해 지금도 여전히 한국·조선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특별 영주자가 52만 명 정도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원래 한국·조선 국적이었던 자들 중 3명 가운데 1명이 지금은 일본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되지만, 이 통계가 많은 것일까? 적은 것일까? 둘 다 해당될 것도 같지만 이번장의 테마는 ‘어째서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가?’이므로, 적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어째서 귀화자의 수는 한정적인가.

아마도 여기서 지적해야 할 사항은 귀화에 대한 평가와 실천 간에 거리가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즉, 재일한국인들은 귀화가 편의를 제공한다는 현실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금기에 저촉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결행할 경우에는

불효와 친구·지인들의 상실, 혹은 민족조직으로부터의 비방과 비판이라는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재일한국인 사회에는 귀화에 대한 억지력과 같은 것이 있으며, 이는 재일한국인들이 어느 정도는 혈연주의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 앞에서 인용한 「오사카·귀화백경」과 거의 같은 시기의 통일일보에는 다음과 같은 투고가 게재되었다.

바로 얼마 전에 아버지가 어디에서 구했는지 '귀화' 신청용지를 들고 귀가하셨다. 그 한 장의 종이로 인해 우리가족은 그날 하루 종일 소란스러웠다.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평생 일본에서 살 작정이려면 귀화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한국국적으로 살아가기엔 일본사회에는 차별이 너무 많다.'며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일본학교에 다니며 아버지가 말하는 차별을 받아왔다. 또한 고교를 졸업하자 취직차별을 받고 '제2의 벽'에도 부딪혔다.(略)

아버지의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귀화 한다'고 하는 의미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나는 그보다는 차별에 의해 망가져 버리고 마는 인간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인 철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태어난 사실, 재일한국인으로서 태어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불변이다.

재일 2세의 경우, 한국어를 할 수 없다면, 습관을 잊었기 때문이라며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당혹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나, 그러한 것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귀화하는 것보다도 차별을 초래하는 비뚤어진 일본사회의 풍조와 교육을 바꾸는 편이 더욱 중요하다. 반대로 말하면, 그것이 또한 일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나쁜 친구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과도 같은 것이다.

갖가지 논쟁을 초래한 이 한 장의 귀화 신청서는 결국, 가족회의에 의해 찢겨져버리게 되었다.

자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아버지의 얼굴이 느낌인지 몰라도 만족스러운 듯 보였던 것으로 봐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자기만족만은 아닌 듯하다.(『통일일보』 1980년 10월 17일)

재일계의 언론에 이러한 식의 귀화를 견제한 기사는 적지 않다. 『KJ타임즈』의 79년 10월 1일자 권두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재일동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트군단의 장본훈(본명 장훈)외야수는 문예춘추 10월호의 재일동포작가 이희성씨와의 대담에서 일부민단의 존립방

식과 일부 재일동포들에게 실망하여 ‘자신은 일본인이 되고 싶었고, 귀화하려고 몇 번이나 고심한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발언하여 열렬한 張本팬, 특히 張本선수의 재일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젊은 재일동포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張本선수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에서 당당하게 한국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이미지를 모든 재일동포들뿐 아니라 많은 일본인들에게도 어필해왔던 점과 상당히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지만, ‘재일한국인으로서 전향적으로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이 선수가 뱉은 말이기 그 말을 하기까지 어떤 심정이었는지 궁금해 하는 측이 많다. 張本선수는 자신의 재일동포사회에서의 입장, 특히 젊은 재일동포들에 대한 영향력에 관해서는 상당히 인식을 하면서도 최근의 논의 부상도 함께 언급하며 ‘지금은 직면한 야구시합 때문에 정신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아마 현역을 마칠 때 여러 가지 일이 생길 것이다.’라며 은근히 수년 후로 예상되는 현역은퇴를 계기로 신변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만일, 張本선수가 일부 민단의 존립방식 등에 실망해서 일본으로 귀화하는 길을 선택이라도 하게 된다면, 재일동포사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민족재산을 잃게 된다. 과연 이를 기우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인가?

민단과 일부 재일동포들에 대한 실망이란 다음의 내용과 같다.

張本선수가 언급하는 재일동포들에 대해 실망한 일례는 히로시마구장과 관련해서였다. 張本선수가 야구팬과의 폭행사건으로 후문에 시달린 적이 있었는데 후일 결정적인 증거사진이 제시되어 張本선수의 무죄가 증명될 때까지 각 언론매체로부터 ‘난폭한 張本’이라며 연일 비난받았다. ‘그때 담화를 위해 찾아온 기자들에게 민단의 단장과 부단장이 張本이 했다면 형무소에 집어넣어 버리라고 했어요. 저는 매우 낙담했고 형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분개해 했어요.’(張本선수)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는 민단의 회비, 즉 민단에 지급하는 비용의 문제. 몇 년 전, 당면한 잠정조치로써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지부를 통한 입(귀)국 신청절차에서도 張本선수의 심리적인 ‘민단으로부터의 괴리’를 조장한 결과로 된 듯하다.(略)

‘제가 여행사에(한국으로의)입국절차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만, 민단의 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하기에, 어느 정도 지급하면 되느냐고 물었는데, 일반인들은 천 엔, 민단의 단장 급들은 삼천 엔 정도 지급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저도 삼천 엔으로 정해서, 1년으로 계산해서 삼만 육천 엔을 여행사측에서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는 유명인 아닌가? 단위가 한 자리 틀릴 것이다. 십만 엔을 가져오라며 도로 내던졌더군요. 나는 이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분하기도 하군요.’

어쨌든 동포애의 결여가 그로 하여금 민단에 대한 불신감, 나아가서는 민단과 괴리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에 말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 때마다 귀화를 생각

했다고 하지만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서라는 생각에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하는 실정
이었던 듯하다.’

민단으로부터의 괴리는 그 후로도 더욱 진행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한편, 80년대 중
반의 지문날인 거부운동 이후의 민단에는 그 이전의 민단과는 이질적인 부분도 있다. 민단은
그 후 권익옹호단체로 변신했으며 귀화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최근 눈에 띄는 것은 오히려
귀화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움직임이다. 96년에 마루한(주)사장인 한창우씨는 파칭코업계에
관해 취재 한 어느 일간지와와의 인터뷰에 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두 라이벌의식이 강해 과당경쟁을 하고 있습니다.(略)

문제는 영업소가 1만8천개나 되고, 경영자는 7천 명이지만 그 약 70%가 재일한국·조선
인들이며 거의 대부분이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찰과 국회위원이 지도와 육성
을 하려해도 곧바로 이상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점차, 보고도 못 본 척 하게 된다.

이런 일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지요. 일본이 관대한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
주의가 강한 나라였다면 커다란 사회문제로 되어 해체되고 말 것입니다.

한일 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 업계의 사람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일본
국적을 취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국으로 돌아갈 리도 없고 영주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
에. 일본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 업계는 좀 더 건전하게 될 겁니다.’(『요미우리 신문』 1996
년 2월24일)

한창우씨는 당시 재일한국상공회의소의 회장이었다. 위의 발언에 대해 민단의
정기중앙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요미우리에서의 한회장의 발언은 민족차별을 용인하는 것이다. 우리민족조직을 어떻게 보
고 하는 말인가? 지금 민단이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방참정권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 작년에는 『새 누리』 지에서도 “참정권 운동 등을 하지 않고 한국계일본인으로써
일본국적을 취득해서 일본의 국정에 참가하는 것이 순리이다”라고 한 씨는 말했다.

파칭코업계는 하루라도 빨리 일본국적을 취득하라는 말은 도대체 웬 말인가? 책임을 지고
산하단체장에서 물러나서, 재일동포사회를 떠나서 개인의 입장에 서야 된다.

나 자신도 유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회장의 요미우리에서의 발언은 용서할 수 없
다. 나는 상공인으로서 그를 한국 상공연합회의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산하단체를 지도하는 조직국의 직무태만에 의한 것이다. 이 신문이 발간되었을 때,
조직국에서 어떻게 대처 했는가.(『통일일보』 1996년 3월29일)

비판을 받고 한회장은 깊이 사죄했지만 그 해 가을에는 같은 내용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파칭코업소의 경영자 70%는 재일한국인들과 조선인들입니다. 전후 정상적인 기업에 취직할 수 없었고 은행으로부터의 대출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차별에 대한 반동과 함께 현금이 유입되는 이런 상업분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파칭코업계는 결국, 차별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차별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싸우는 것입니다. 일본사회는 저를 단련시켜주었습니다.

-마루한의 임원인 아들들은 일본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재일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과 국적은 별개입니다. 한민족의 언어와 역사를 배우는 한편,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생활과 영업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정에 참가하는 투표권을 갖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가들은 우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게 되고 파칭코업계도 변하겠죠.(『아사히신문』 11월22일 석간)

한회장은 또다시 비판을 받았지만(『통일일보』 같은 해11월7일), 그 후의 뉴스는 없다. 그의‘귀화적극론’은 밀폐되었다는 것일까?‘귀화=민족배신자’는 지금도 적용되며 그것은 재일한국인들에게 귀화를 주저시키는 유효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注3]

[주3]

귀화의 부정성이 언급되어질 때, 지금도 자주 거론되어지는 것으로는 『목숨이 다하여도』(大和書房,1971년)라는 유고집을 남기고 자살한 山村政明씨의 사례가 있다. 염태호씨는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

山村씨는 55년6월 아홉 살 때 양친과 함께 귀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4년생이었을 때 논길에서 상급생들의 괴롭힘으로 흙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곤 했던 기억들입니다. 중학교 3년생이었던 누나는 진로상담을 할 때 담임으로부터‘너는 다른 집 애들과는 다르기 때문에……’라는 말을 듣고 눈이 퐁퐁 붓도록 울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교를 졸업하고 일단은 취직을 했지만 그 후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민족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민족의 피를 속이고 일본명으로, 일본인척하고 살아온 세월. 그 자책과 고뇌가 나의 표정을 침울하게 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현재의 감각에서 본다면 그는 너무나‘부정적인 사고’를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70년이라는 시점에서는 매사를 정치적으로 채색하는 경향이 강했고‘흑백논리’라는 이분법적인 사

고방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본국적을 지닌 채 게다가 재일한국·조선인으로서의 자기를 형성해 간다고 하는 것은 온몸이 갈 같이 찢기는 모순 가운데 뛰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재일한국·조선인 讀本』 연풍출판,1996년)

위의 글은 山村政明씨의 자살에 약간 동정적인 글이었지만 비판적인 글도 있다. 그가 자살한 1970년, 가족과 함께 일본국적을 취득한 김영달씨는 山村씨의 자살행위와 그것에 관해 언급한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격렬한 비판을 했다.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라는 도서명으로 분신자살한 젊은이 山村政明의 유고집이 출판되었다. 나의 눈에 띄는 서평들은 한결같이 온갖 표현으로 이 책을 극찬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은 책상 한켠에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 온힘을 다해 싸워서 버려야 될 책이다.’라고 말하고 싶다.(略)

유고집에는 이회성이 山村政明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중국적자의 외침’이라는 서문을 기고했다. 그 내용 가운데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근원적인 원인이 민족문제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살아남은 자로서 확인해보자’라고 말했지만 그의 관점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초점을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족문제는 山村政明뿐만 아닌 재일의 청년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제 와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우리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山村政明의 죽음이 그의 나약함·미숙함에 의한 것이며, 민족문제, 특히, 귀화가 초래한 문제가 죽음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즉, 해결불능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회성뿐만 아니라 재일 2세의 동화현상을 논하는 데 있어서 山村政明의 죽음을 데마로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이고 있는 위험한 경향을 문제시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들은 재일조선인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 동화·귀화를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略) 하지만 왜 거기에서 山村政明의 자살을 거론해야 되는가? 그들은 일본인들을 향해서 일본사회의 민족차별이 더욱 심각한 것이라고 호소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족문제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데 있어서 山村政明의 죽음을 제시하는 것은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 ‘나의 심정을 너희들이 알겠는가?’라며 스스로 상호이해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일본인들을 침묵시키고 마는 것은 아닌가.

또한, 재일 조선인청년들에게는 山村政明의 죽음을 들먹이며 그 동화경향에 대해 경고하고, 귀화로 기울고 있는 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는 재일젊은이들의 민족적 주체성확립에 기여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민족적 허무주의와 거부감으로 이끌 뿐이다.

그리고 이미 귀화한 자들에게는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略)

山村政明이 얼마나 진지하게 민족문제에 뛰어들었고 필사적인 투쟁 끝에 마침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설명방식은 귀화자들에게 죽음의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은 의미다.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언어를 배우게 된 나로서, 山村政明은 정말 곱끄러운 존재이다.(「재일조선인의 귀화」 明石서점, 1990년)

2000년5월8일, 김영달씨의 변사체가 효고(兵庫)현 오자키(尾崎)시의 자택에서 발견되었다.

재일조선인사의 연구자인 동시에 RENK(구해라!북한의 민중/긴급행동네트워크)의 대표이기도 했던 그는 재일 2세라기보다는 다정다감한 한국계 일본인으로 기억되어도 좋을 것이다. 본명은 大野英達. 그가 일본국적을 취득한 것은 22세 때였고 가족동반의 귀화였다. 그는 이러한 자기체험을 동기로 삼아 재일론에 관해 쓰기 시작하여, 『일본의 지문제도』(사회평론사), 『재일조선인의 귀화』(明石서점), 『창씨개명』(明石서점), 『북일국교 정상화와 재일조선인의 국적』(明石서점) 등의 저서를 남겼다. 『목숨이 다하여도』에 관한 위의 글의 초판은 1976년 3월의 「무궁화통신」(神戸). 개인적인 사항을 부가설명하자면 나는 그와 동년배이며 역시 자신의 체험을 동기로 해서 재일론에 관해 쓰기 시작했다. 위의 글과 같은 시기에 「무궁화통신」에 「미국에 있는 한국인」이라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심리적 저항

한편, 재일한국인들 가운데는 혈연주의와는 무관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외적인 억지력은 언뜻 보기에 없는 듯 보이지만 귀화절차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사정과 이유가 교차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중요한 것은 재일한국인들에게는 외국인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자들에게 현행의 귀화절차의 동화주의적인 성격과 번잡함은 심리적 저항을 불러오기 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염태호씨의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귀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지를 갖고, 품행의 선량 등 일정요건을 만족시킨 후 신청하면 외국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청만 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허가여부는 일본정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귀화’라는 말에는 완력으로 굴복시킨다는 듯한 이미지를 좀처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언어자체에 ‘따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생활상 여러 면에서 완전히 ‘일본인’화되었는지에 관한 심사가 있으며 바로 최근까지는 ‘일본명’을 사용하도록 강력하게 지도되었습니다. 귀화하는 것은 국적의 변경에만 그치지 않고 ‘조선인으로서의 자신’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생활상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에 민족을 속이고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 재일 한국·조선인들은 자부심을 잃어선 안 된다며 귀화에 반대하여 왔습니다.

자긍심이란 말하자면 ‘자신은 누구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역사에 의해 자신이 존재하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은 노동력의 조영역도 아니며 소모품도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생활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귀화를 하면 권리를 얻는다.’는 표현은 마치‘기능을 배우면 먹이를 주겠다.’라고 하는 동물의 조련사와 닭았다는 비유는 좀 지나친가요?(『알고 있습니까? 재일한국·조선인문제 일문일답』 해방출판사,1991년)

이것은 재일한국인 지식인들이 귀화절차에 대해 말할 때의 온건하지만 전형적인 연설문이며 여기서 비난받고 있는 것은 동화주의적인 성격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뭔가 착각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귀화절차에 동화주의적인 성격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며, 그것이 예를 들어 小錦나 라모스瑠偉와 같은 이문화 출신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문제가 적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동화주의적인 귀화절차는 제1세대에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일본에 거주한지 70년이나 되는 재일한국인들에게도 적용되고 만다. 즉 현행의 귀화절차는 그것이 타문화 출신자에게 적용되는 한, 합당한 것이라 해도 재일한국인들과 재일조선인들에게 적용된다면 불합리한 인상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염태호씨는 원래대로라면 그런 점을 비판했어야 한다. 귀화허가의 조건에는 예를 들어‘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항목이 있다. 따라서 재일한국인들도 해외출장으로 1년 정도를 일본국외에서 지낸다면 또다시 5년을 기다려서 (일본이 출생지라면 3년을 기다려서) 귀화절차를 개시해야 되지만 재일한국인들의 경우는 만약에 1년을 해외에서 지낸다고 해도 그로인해 일본어를 잊어버리고 만다든지, 일본문화에서 멀어지고 마는 일은 없다. 재일한국인들의 대부분은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환경으로 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따라서 재일한국인들에게 이와 같은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재일한국인들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귀화의 시기를 벗어나 버리고 말았는지도 모른다. 귀화란 원래 우리들이 약간의 이질성을 지니고 있을 때 해두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국가에 대한 포부는 언어가 약간 서투를 때가 말하기 좋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자명해지고 외국인의식이 희박해지면 귀화절차가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귀화가 심사의 성격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현행의 귀화절차는 재일한국인들에게 심리적 저항이 적지 않다.

생활에 지장이 없다

④에서 말하는 한국국적을 유지해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는 상황은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의 소산이면서 동시에 7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친 영주외국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의 철폐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재일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거의 같은 권리·의무관계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국적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재일한국인들의 삶을 강하게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귀화를 하지 않더라도 생활에 그다지 불편이 없다는 상황을 뜻한다. 이청약씨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 이씨집안이 귀화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생활해도 약간의 불편은 있지만 전혀 부자유가 없다는 점 일 것이다.

약간의 불편이라는 것은 주로 절차상의 문제이며, 외국인등록증명서의 교체를 위해, 5년에 한번, 생일이후 한 달 이내에 등록증과 사진을 가지고서, 도민인 경우는 해당구청으로 가야 된다. 일본과 외국을 왕래한다면 일본의 재입국허가를 받기위해 4년에 한번 입국관리국에 가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略)

귀화를 별로 내켜하지 않는 아버지는 항상 다음과 같이 말해 오셨다.

‘이대로도 잘 살 수 있고, 이제 와서 하는 것은 귀찮다’

귀화신청을 위해서는 갖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고 번잡한 수속을 마쳐야 하며, 시간도 걸린다고 한다. 또한 일본국적을 취득할 때의 기준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찮은 것은 분명할 것이다.

‘관공서에 가서 귀화를 신청한 당일에 일본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면 좋을 텐데. 그러면 재일의 존재는 없어지고 말지도 모르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곤 했지만, 실제로 그랬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서, 일본이 고향인 나에게는 1세인 아버지의 기분을 전부 알리는 없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귀화하면 고향과는 단절되고 만다는 생각에 쓸쓸한 기분이 드셨을 것이다.(「재일한국인 3세의 심경」草思社,1997년)

히타치(日立)재판투쟁의 유산

⑤에서 말한 80년대 이후의 재일한국인운동은 지문날인거부운동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의 것은 히타치(日立)재판투쟁이며 우선은 그 사례부터 다루어야겠다.

1970년 아이치(愛知)현의 공립고등학교 상업과를 졸업하고 인쇄공으로 일하고

있던 박종석씨는 히타치(日立)제작소 소프트웨어 도츠카(戸塚)공장의 모집공고를 신문에서 읽고 취직시험을 봤으며 회사로부터 채용통지서를 받았다[주4]. 하지만 후에 재일한국인이기 때문에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자 히타치(日立)는 이력서의 기재를 사칭했다는 이유로 채용취소를 했다(그는 성씨란에 新井鐘司라는 이름을, 본적란에는 현 주소지를 기재했었다). 그는 몇 번이나 회사에 가서 대항해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가 요코하마(横浜)역에서 서명활동 중이었던 게이오(慶応)대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호소하게 된 것은 마침 그런 와중이었고 결국 그들의 지원을 받고 히타치(日立)제작소를 제소하게 된다. 70년 12월 8일의 일이었다.

‘박종석씨 후원회’라는 지원조직이 형성되어 재판투쟁이 시작되지만 당초에는 노동계약상의 해고문제로서 공방이 벌어졌다. 즉 그가 응모한 자격이 임시직원인가 정사원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채용통지의 발송은 노동계약의 예약 혹은 정식노동계약의 체결로 되며 따라서 내정취소가 되던가 아니면, 해고가 되는 차원의 문제였다(飯沼二郎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재일조선인』 일본기독교단 출판국, 1982년). 하지만 ‘박종석씨 후원회’의 재일한국인청년들로부터 히타치(日立)가 그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민족차별’[주5]이며, 재판투쟁을 통해서 일본사회의 ‘민족차별’의 실태가 고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계기가 나왔다. 이것이 결국 재판투쟁의 기초로 되어간 것이다 (최승구 『개인으로부터의 출발-재일조선인의 입장에서』 1995년, 인쇄물).

74년, 재판은 원고측의 전면 승리로 끝났다. ‘후원회’가 재판과 병행해서 행했던 히타치(日立)와의 직접교섭에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히타치(日立)내부규약이 폭로된 것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후원회’멤버였던 최승구씨는 그 때의 단체교섭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들은 재판투쟁과는 별도로 히타치(日立)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자, 판결이 예정된 6개월 전부터 히타치(日立)와의 직접교섭을 시도했다. 뜻밖의 반응에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주도면밀히 준비를 해온 우리 측의 질문에 모순된 발언을 하는 등, 차기 회합을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들은 더욱더 그들의 모순을 파헤치고 수차례에 걸쳐서 히타치(日立)를 직접, 교섭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에 성공했다. 네 차례의 교섭이 이루어졌고 히타치(日立)측에서는 근로부장이 출석했다. 그들은 끝까지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사회

의 민족차별의 존재조차 부정했다. 히타치(日立)측은 당초 박씨에게 ‘일반외국인은 채용하지 않는다.’며 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을 재판에서도 일관해서 부정했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때의 녹취록이 있었다. 또한 히타치(日立)사원 중에서도 운동에 동조하는 자가 나타나서 우리들은 그들로부터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서류를 입수했다. 차별을 완강하게 부인하던 부장에게 나는 그 비밀문서를 집어던졌다. 그것은 히타치(日立)의 노무담당자들을 교육 대상으로한 연구회에서 학습된 자료였다.

공산당, 민청 등의 사상적 편향자, 열렬한 참가학회원은 고용하지 않기, 정신, 신체이상자는 고용하지 않기,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고용하지 않기……

결국, 히타치(日立)측은 외국인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내부규약이 있으면서 그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해고시켰다는 등의 주장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쓴 일본명과 일본주소를 거론하며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혹은 그렇게 하도록 만든 일본사회의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알고도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부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차기 회합을 약속했다.(略)

참가자는 2백 명을 넘었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연장자의 동포들도 히타치(日立)와 대치했다. 히타치(日立)의 상무는 서두에서 박종석군의 채용내정의 취소를 철회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지만, 자신들의 행동이 차별이었다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참가자들로부터 격렬한 규탄을 받고서야, 겨우 ‘일본사회에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자신들에게는 차별의도가 없었다고 완강하게 주장했다. 연장자인 동포들이 논하는 바와 같이 ‘당신들도 인간이지 않느냐? 히타치(日立)의 체면만 생각하지 말고 인간으로써 대답해 주시오’라고 하자 그는 당혹해 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3년간……히타치(日立)가 박군에게 행해온 것은……차별이었다……는 사실을……인정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침묵이 이어졌다. 양자간에 확인서가 교환되었다. 단체교섭이 시작된지 6시간이 지나서였다’(전개인쇄물)

히타치(日立)재판투쟁은 ‘민족차별’문제가 이슈가 된 첫 재판투쟁이었으며, 그 후에 계속된 일련의 ‘민족차별’에 대한 이의신청운동의 효시가 되었다. 히타치(日立)재판투쟁은 또한 민단과 같은 조국지향적인 조직이 재일의 권익옹호를 슬로건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역사적인 의미는 크다.

하지만 ‘후원회’에 참가했던 것은 약간의 일본인들과 그보다 더욱 소인수의 재일들이었으며, 그 활동은 재일동포사회로부터 고립된 것이었다. ‘박종석군 후원회’는 그 후 ‘민족차별과 투쟁하는 연락협의회’(민투련)로 발전하여 승화되었고 관동과 관서지방에서의 지역 활동을 시작했다. 가나가와(神奈川)현의 가와사키(川崎)시가 후에 ‘공생의 마을’등으로 불리게 된 것은 이러한 ‘민투련’멤버가 활약한

역할이 컸다. 가와사키(川崎)시의 가와사키(川崎)구는 관동지방에서는 최대 규모였던 재일들의 집단거주지역이이며 ‘후원회’의 멤버는 재판투쟁 시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였고 결국, 몇몇은 가와사키(川崎)시의 직원과 거주자로서 ‘공생의 마을’만들기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주4]

히타치(日立)투쟁은 마침 많은 재일 2세들이 청년기를 맞이하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며, 박종석씨의 성장과정에는 재일 2세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그는 아이치(愛知)현 니시오(西尾)시에서 박을석(아버지)씨와 김남개(어머니)씨 사이에서 아홉 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가정은 빈곤과 불화가 이어졌고 아버지는 가출했으며, 박종석씨 자신도 중학2년 때 가출하여 도쿄에서 2개월 정도 신문배달을 한 적이 있었다. 문서에는 이력서에 ‘허위’의 ‘이름’과 ‘본적지’를 기입한 경위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태어나서 계속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고 자신도 일본사회에 소속되어 살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중·고교에서 노력만 하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일본인으로부터 존경받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체험했고 자신도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체험을 통해서 조선인이기 때문에 차별당하고 마음대로 뺏어나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지만 일본이라는 국가와 사회의 이해력 있고 훌륭하신 분들은 결코, 능력 있는 인재를 간과할 리가 없다는 믿음이 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었습니다.(略)

내 주변의 부모형제들, 친척과 동포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나 자신만 하더라도 나약해서 유혹에 무너지고, 게을렀으며, 제멋대로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되었다는 생각이 마음 한 구석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나는 히타치(日立)의 구인광고를 보고 어떤 의미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 일본최고의 회사는 일본최고의 기술은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너의 재능을 여기서 발휘해보지 않겠는가?’라고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채용제도 있음’이라는 문구가 더한층 나의 꿈을 부추겼습니다.

나는 확고하게 응모할 결심을 하고 정신없이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헉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新井鐘司라는 이름은 그때까지 나의 본명이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적었습니다. (略)

하지만, 본적란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가진 외국인등록증에는 한국 경상북도 달성군 월배면 진천동이라는 곳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딘지 나는 가 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본적이 고향이나 마찬가지로 한다면, 내가 태어난 고향은 부모가 살고 있는 니시오(西尾)시입니다.

단지 나는 히카리 제작소에 제출한 이력서상에는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고, 외국인등록증의 이름인 津田鉾金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히타치(日立)의 입사시험에 제출하는 이력서에 국적을 한국이라고 적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했습니다.

형들과 선배들로부터 일본의 대기업은 조선인을 절대 고용하지 않는다고 나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略)

나는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 나간다고 하는 용맹 무쌍한 상태였습니다.

만일 한국이라고 썼다는 이유로인해서 시험조차 볼 수 없다면 참을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나는 자신이 태어난 부모의 주소를 본적지로 기입했습니다.(박종석군 후원회편 『민족차별 히타치(日立)취직차별 규탄』 亞紀書房,1974년)

[주5]

‘민족차별’이라는 말의 용법에 관해서는 박정조씨의 다음과 같은 지적이 중요하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민족차별이라고 탄핵해 온 사건들의 상당수는 사실, 민족에 의한 차별이 아닌 국적에 의한 차별이었다. (略)

우리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들, 한국·조선민족에 대한 일본인들의 편견과 차별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공립학교의 교원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었던 것은 조선인들은 직무능력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편견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은 한국인들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면 그들은 이것을 악용하지는 않을까라는 잘못된 선입관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은행이 우리들에게 대출해 주지 않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우리들에 대한 편견, 즉‘조선인들은 특하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언제 그 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이다. 전자는 우리들에 대한 민족적 편견이며, 후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인 일반에 대해 품는 의심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일반적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논하는 것은 심각한 인식부족이라고 말해야 하겠지만 <略>우리들이 일부에서 언젠가는 본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오해를 초래하는 태도를 보여 온 이상, 우리들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리들이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민족적 차별은 받았을 테지만 적어도 이러한 제도적 차별은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재일한국인의 국적문제제고」 『현대코리아』 1997년 10월호)

사회적인지도의 고양

하지만, 재일한국인들이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권을 획득하는 것은 정체성과 귀속간의 어긋남과 괴리의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며, 그것은 재일한국인들의 귀화에 대한 준비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80년대는 재일한국인들이 국적의 문제에 대해 자기검토를 첨가해도 좋을 시기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재일한국인 활동가들이 시작한 것은 지문날인거부운동이라는 국적문제를 보류하는 듯한 운동이었으며 그것은 일본인들이 재일에 대해 대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의 일본의 대중매체가 ‘국제화론’과 ‘공생론’, ‘인권론’이라는 형태로 민족주의그룹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동시에 ‘교과서문제’(82년)이후의 한일관계가 심리·도덕적인 성격을 강화시켰다는 사실이다. 만약 지문날인거부운동이 70년대에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지역적인 운동에 그쳤음에 틀림없다. 날인거부자는 사실 50년대와 60년대에도 있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투쟁으로 끝났었다(비교적 알려진 것은 56년 11월, 시모노세키(下関)에서 날인을 거부하고 징역4개월과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받은 안상도씨의 사례일 것이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지지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도 이러한 상황은 얼마간 계속되었다. 날인거부자들은 80년대에 2명, 81년에 6명, 82년에 21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해 갔지만, 29명의 거부자 가운데, 한국·조선국적인이 24명이었다. 그 상당수는 이의신청을 해왔던 자들, 혹은 가족이나 관계자들이며 재일 대한기독교교회와 민투련의 관계자들이 두드러진다. 이 시기에서의 운동은 아직 가족중심적인 활동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고, 운동주체측과 활동가들의 주요 관심사는 오히려 공영주택의 입주와 금융공기금의 용자라는 제도적 차별의 철폐에 있었다.

하지만 날인거부자 가운데 미국인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점과 미국유학의 꿈을 저버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날인에 응했던 여고생의 사례가 매체에 소개되었고, 거부자들의 체포뉴스와 한국에서의 반발이 전해지자 경찰간부에 의한 ‘차별 발언’이 보도되었고 상황은 달라졌다. 날인거부자들은 시대적 인지도를 얻었고 또한 거부자들의 대량발생이라는 사태를 초래하여(절정기였던 85년에는 그 숫자가 1만 6천명에 달했다) 드디어 특별 영주자와 영주자에 대한 날인제도를 철폐

로 이끌어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날인거부운동은 인권주의와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일본의 말과 반일국가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의 말이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와 같은 것으로 마차에 타고 있는 마부는 소수의 재일한국인이었다.

어째서 이 시기에 재일한국인들의 국적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는지는 이 두 마리의 말과 마부의 삼각관계를 생각해본다면 잘 알 수 있다. 마부의 자리에 있는 재일한국인들에 있어서 한국국적은 피해자적인 성격과 이질성의 가장 확실한 징후이며 그들은 그 사회적 기호를 자기 정체성의 핵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편 인권주의와 다문화주의를 가장 핵심으로 삼는 일본의 말에게는 재일한국인들은 이러한 일본국의 가해자성과 억압자성의 살아있는 증인임과 동시에 문화적 이질성을 갖는 사람들이며 그들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것은 인권사회와 공생사회를 실현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일국가주의 말에게는 재일한국인들의 인권과 다문화주의 문제는 흥미를 끄는 테마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반일국가주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렇다곤 하지만 날인거부운동은 이상야릇한 운동이었다. 민투련계의 운동이 그렇듯이 그것은 소인수의 게릴라적 활동에서 시작되어 드디어 민단이 참가하게 되었지만 재일운동 가운데 이처럼 중상모략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운동은 없었으며 이 정도로 내외 언론매체에 의존했던 운동도 없었으며 이 정도로 유희적·즉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의 사례도 없다.

마지막 부분의 지적에는 즉시 이의가 있으리라 생각하므로 약간의 언급을 덧붙이고자 한다. 분명히 운동은 차별에 대한 투쟁이라고 이야기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차별반대의 운동이더라도 재일의 실질적인 생활의 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차별의 상징에 대한 투쟁이었으며 그러한 차별의 상징에 대해 운동이 이행되었다는 것은 차별 그 자체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다(로날드 도어 씨의 발언 「재일한국·조선인문제의 현재」 『세계』 1995년 4월호). 활동가들은 입을 열면 재일에 대한 차별은 ‘지금도 심각하다’, ‘내향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한다. 하지만 심각한 차별이 있었다면 어째서 심각한 현실자체가 거론되지 않고 ‘검지 손가락의 자유’ 등 유머러스한 슬로건이 나온 것일까? 또한

차별이 내향적이라는 것은 차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말하자면, 심각한 차별상황이 없어졌음을 의미한다[주6].

[주6]

흥미로운 점은 이와 매우 흡사한 변화는 부락차별의 상황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畑中敏之씨는 최근 십년간 보고된 '차별사건'의 70퍼센트가 소위 화장실 등의 '차별낙서'에 집중되는 현상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에 화장실 등에 적혀진 '낙서'의 내용들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라면 '차별적인 낙서'의 다발성이 부락차별의 심각화의 근거로도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고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 예를 들어 '야만족들이 돼져라'라는 글은 공공의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있기에 '범인'도 역시 그런 사실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데서 익명의 행위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차별적 낙서 다발성=부락차별심각화'를 논하는 자는 이를 '음성화'라고 하며 '심각화'의 근거로 삼을 것이다. 하지만 사태는 오히려 그 반대이며 이것은 '차별은 화장실에다 가뒀두었다'라고 파악하는 편이 좋지는 않을까?'(『부락사의 종결』 가모가와출판, 1995년, 小浜逸郎 『약자는 누구인가』 PHP新書, 1999년 수록)

원래 히타치(日立)재판투쟁에서는 보살피는 자의 입장에 있었고 그 후 민투련의 대표를 역임해서 80년대 이후는 오히려 재일운동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佐藤勝巳씨는 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친 차별반대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족차별 반대운동에 직접적으로 의문을 품게 된 것은 1979년 봄 도쿄치과의사회의 민족차별을 바로잡는 운동에 참가한 이후 부터였다.

최초의 의문은 차별받았던 당사자에게서 분노가 전혀 표출되지 않았던 점이다. 히타치(日立)제작소로부터 취직차별을 받은 박종석군은 1950년생이지만 1세와 비교하면 1세가 지지고 있는 거칠고 썩썩한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고 외견상으로는 인텔리적인 나약한 청년이었다. 어린 시절 받았던 민족차별과 빈곤과 쓰라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감과 분노로 되어 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치과의사회로부터 차별받은 여학생은 피차별의 체험도 없었고 빈곤함도 몰랐으며 따라서 분노도 없었다. 부모들도 차별에 항의하는 태도가 소극적이었고 10년 전인 히타치(日立) 때와는 매우 양상이 달랐다.(略)

그러한 양상의 변화는 이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에게도 확연히 드러났다. 히타치(日立)운

등을 이끌었던 동포이자 중심활동가들은 대체로 194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며, 모두 한결 같이 피차별의 체험을 했다. 치과의사회의 운동을 이끌었던 한국인 청년들은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과거와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피차별의 유무를 물어보았는데 입을 맞춘 듯이 ‘노’라는 회답이었다.

피차별의 경험이 없는 자에게 분노가 표출될 수가 없다. 히타치(日立) 때는 단체교섭의 현장 등에서 재일한국인들의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애를 먹었던 기억이 몇 차례인가 있었지만 치과의사회 때에는 그러한 경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교섭의 현장 등에서는 일본인들보다 온화할 정도이다. 일본사회의 민족차별상황이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재일한국·조선인에게 묻는다」, 亞紀書房, 1991년)

佐藤씨는 날인반대운동의 유희성과 즉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음의 사항도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고 본다. 종래의 민족차별 반대운동은 차별사건이 발생하고 거기에 항의한다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좀처럼 차별사건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운동자 측이 사건을 ‘유도하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금융기관에 재일의 누군가가 개인용자의 대출을 신청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국적조항을 이유로 거절하면 민족차별이라고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식이다. 용자관계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은 필자가 아는 것만으로도 두세 가지가 있다.

또한 어떤 지방교육위원회가 외국국적소지자의 교원채용시험 신청을 거부하게 될 것을 사전에 파악하면서도 굳이 신청을 하여 재판으로 전개시키는 사례를 듣게 되었다. 또한 1982년부터 사회보장측면 등에서 제도적 차별이 철폐되면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전해졌다. 지문거부의 한 가지 전형적인 방법은 고의로 등록증을 세탁기에 넣어 훼손시켜 재발행 신청을 할 때 날인을 거부하는 방법이 많았다.(略)

미국에는 잘 아는 바와 같이 함정수사라는 것이 있을 정도이므로 민족차별을 없애는 방법·수단의 한가지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에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필자의 감각이랄지, 윤리관에는 맞지 않았던 일임에는 분명하다.

아무튼, 이와 같이 민족차별을 ‘유도’하지 않으면 운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일본사회에 분명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볼 수밖에 없었다.(同書)

여기서 지적되는 ‘유도’적 성격은 중요하다[주7]. 날인거부운동은 많은 일본인들이 재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사건인데, 그것은 그 후의 일본인들의 재일에 대한 이미지와 재일에 대한 태도를 크게 규정짓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종의 시간 착오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작’적 성격은 그 착오를 무마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로 말하자면 날인거부운동이 사회적 인지를 얻었던 80년대 중반은 재일이 제도적 차별에서 해방된 시기였으며 동시에 문화적 이질성이 사라진 시기이기도 했지만, 활동가들과 거기에 연대한 사람들은 재일의 '피차별성'과 '이질성'을 마치 현재형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특히, 일본인들은 재일이 제도적 차별에서 해방되고 문화적 이질성이 사라진 후 비로소 재일들의 피차별성과 이질성을 발견했다는 상황이 된다.

그 후의 추이를 보면, 위에서 지적한 모순은 일본인들과 재일들과의 관계에 있는 일종의 기만적 정형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된 듯하다. 그리고 현재 이 기만극이 가장 전형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NHK교육방송인 ETV특집일 지도 모르겠다. 그 비교적 최근의 사례로서 「변하는 재일코리아」(2000년 9월11일~14일)이라는 방송이 있었다. 셀비스틸식으로 말하자면 이 방송에서 엿보여지는 연출가에 의해 조작된 논의의 정형이 있다. 즉 재일출신의 출연자는 적당히 억제해가면서 자기의 피해자성과 이질성에 대해 말하고 '민족차별'이야말로 재일들과 일본인들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이며, 그 차별은 걸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 곳에 있는 일본인 사회자는 재일출신인 '전문가'의 논의에 동조해가면서 방송을 진행시키고 일본인과 일본사회의 민족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전문가'에게 묻는다. 이런 식의 '전문가'로서 NHK가 선호해서 기용한 인물은 강상중씨(동경대학 교수)와 신 숙옥씨(인재육성 컨설턴트)이며 사회를 담당한 것은 町永俟雄씨였다.

이것은 80년대 이후에 정착된 일본인들과 재일들간의 새로운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것은 그 후 거의 그 누구로부터의 비판을 받은 적도 없이 새로운 일본인들과 재일들의 규범적 관계로써 정착되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국적문제는 보류되어지는 한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난다. 재일한국인들에게는 외국국적을 포기해도 좋은 시기인 동시에 포기하기 힘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주7]

운동의 '유도'적 성격 혹은 작위적 성격에 관해 佐藤勝巳씨의 글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도 있다.

‘나는 1969년경부터 1980년까지 약10년 간 출입국관리법안을 비롯한 재일한국·조선인의 법적지위와 처우문제로 그들과 일본인에 대한 강연을 해 왔다. 그 가운데 외국인 등록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십 차례 언급해 왔지만, 그들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가끔 반응이 있었지만‘자신들은 외국인이므로 불쾌하지만 일본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略)

그 뿐만이 아니다. 1982년 외국인등록법이 대폭 개정되었지만 그 때 지문날인을 거부한 것은 불과 몇 명이었고, 정말 굴욕으로 온몸이 전율했다면 이러한 대폭개정을 기회로 여겨 대규모 운동이라도 전개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 때(1982년) 운동을 전개했다라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1985년 대폭으로 교체할 때에 날인거부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면 그런대로 납득이 될 것이다. 82년 법 개정 시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85년 전면 교체 시에는 갑자기 날인보류 혹은 거부라는 행위를 하다가 특히 20년 전부터 굴욕으로 온몸이 전율했다는 등의 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전게서)

이와 유사한 田中明씨의 글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차별철폐운동이 한창이던 때에도 지문날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82년에는 외국인등록법이 대폭 개정되었지만 만약 지문날인이 운동가들이 말하듯 인권무시의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굴욕’으로 받아들여졌다면 당연히 이 때에 철폐운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지문날인은 공영주택의 입주라든가 금융공기금의 용자에서와 같은 물질적 차별과는 다르다는 판단이 재일동포들의 의식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얼마 전에 TV좌담회에서 미국인인 케인트 길버트, 케인트 딜리커트씨가 사회자로부터‘지문날인에 대해 어떤 기분이 됩니까?’라고 질문하자, 두 명 모두‘아무렇지도 않다’고 대답한 것은 흥미로웠다. 즉 지문날인은 그 행위자체가 인권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본인의 조건과 심리에 기인되는 것이다. (略)

그러한 문제에 대해, 재일출신의 운동가들은 외국인 등록증의 대폭교체시기인 85년을 앞두고 고조되어 있었다. 제도적 차별이 없어진 상황에서 권익옹호운동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상황 안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재일”에 있어서 “국적”은 무엇인가?」 『제군!』 1991년 2월호)

한편, 날인거부운동의 필연성을 지적하는 자가 있다.

상황이 단기간에 격변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문날인문제가 어떤 사건을 단기간에 사회문제화 하는‘대중매체사회 일본’에서 거론되기 쉬운 이슈를 포함하고 있었던 부분도 그 이유 중 한가지이다. 재판에서 지문제도로 투쟁하고, 시민적 불복종을 주장한 미국인여성과 지문날인을 거부했지만 미국유학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울면서 지문을 찍은 여고생의 이야기. 지방자치단체의 의향을 무시한 경찰이 거부자를 체포하자 거기에 대한 한국의 반발. 마찬가지로 법무성의‘개선’책에 대한 한국 측의 반발. 경찰간부가‘일본의 법률에

따르는 것이 싫다면 돌아가면 된다.’라는 발언 등.

하지만 위와 같은 사건은 지문문제 가운데서는 매우 일부분이며 표면에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다. 이 문제가 이 정도로 사회문제화 된 저변에는 70년대 후반부터 점진적이긴 하지만 크게 진행되어온 다음의 두 가지 변화와 조류가 있다.

그중 하나는 지금까지 지문을 찍어온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일한국·조선인들이 드디어 일본사회의 일원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라는 현실에서 회피하지 않고 자기인식에 입각한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그러한 재일들의 존재를 볼 수 없었고 또한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일본사회가 (略)드디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인식 방법에 있어서, 또한 ‘국제화’된 일본사회의 존립방식이라는 자기인식에 있어서 종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 된다.

『중앙공론』(略)에서 나는 지문제도 철폐운동은 사회일원으로서 일본에 깊이 뿌리내린 재일한국·조선인들의 소박한 실감에서 시작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이 크게 고조되어 지속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위의 소박한 실감은 철폐운동을 받아들이는 일본사회의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이기도 하므로 지문문제는 일본사회전체의 관심과 공감을 부르고 있다고 적었다. 그 후 1년간의 사태의 전개를 보더라도 위의 관찰은 그리 빛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大沼保昭 『단일민족 사회의 신화를 넘어서』 東信堂, 1986년)

마찬가지로 田中宏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문도입 전후, 그리고 (略) 그 후도 계속된 ‘날인거부’에 대해 일본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역시 ‘마음의 웅덩이’로 인해 방해받고 있는 것은 아닐 런지. 하지만 외국인의 저항은 드디어 ‘지하수’가 되어 표면적으로는 보기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마르는 일 없이, 언젠가는 걸으며 분출될 ‘사명’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80년대에 들어와서의 커다란 움직임이 되었고 드디어 그 ‘아픔’을 자각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의 참가에 의해 표면화된 것이다. 한중석씨는 따라서 정확하게는 지문날인거부 제1호가 아닌, 일본인의 눈에 보인 제1호였다.(『재일외국인』 岩波新書, 1995년)

국적불투명의 시대

⑥에 기재된 ‘모라토리움 인간화’는 정신의학자인 小比木哲吾씨의 키워드를 차용한 것이다. ‘모라토리움 인간’은 ‘정체성 인간’에 대립되는 개념이며 ‘정체성 인간’이 조직과 집단에 대한 동일화를 지향하는 데 비해 ‘모라토리움 인간’은 조직과 집단에 대한 동일화를 거부하고 귀속을 피하려고 한다. 小比木씨는 이러한 ‘모라토리움 인간화’가 일본의 전후세대의 사회적 성격이 되어있다고 말하는데 (「모

라토리오움 인간의 시대」中公嚴書)、 이와 비슷한 사회적 성격은 재일한국인들에게서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재일한국인가족의 부모들 세대를 구성하는 것은 전형적으로는 60년대부터 70년대에 청년기를 지낸 2세대이며 그들은 전후일본의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서 민족과 국가와의 일체감의 부정성을 배운 세대들이다. 물론, 재일한국인들이 일본인들과 완전히 같은 ‘모라토리오움 인간’이라는 것은 아니다.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라는 자문은 귀국자녀들의 사례들을 제외하면 일본인들과는 무관할 것이다. 그에 비하면 재일한국인들에게는 정체성과 국적간의 불일치라는 감각이 있으며, 일상적으로는 잠재화되어 있다 해도 국적이라는 ‘꼬리표’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꼬리표가 방치된 채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그자체의 교체가 곤란하거나 무관심할 것이며 혹은, 그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고 보는데 대답은 아마도 세 번째 일 것이다. 귀화절차의 번잡함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다루겠지만 전후 세대인 재일한국인들은 小比木씨가 말하는 ‘모라토리오움 인간’과 같은 시대인들이며 우리들은 모두 ‘국적불투명 증후군’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적불투명 증후군’은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교육에 유래하는 것이지만 일본사회가 인간의 모빌리티(이동성)가 결여되는 점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는 일본국적으로 귀화하는 사람들도 적지만 일본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다. 이와 같은 국가에서 일본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격형성을 하게 되면 국적을 바꾸는 등의 발상이 생기기 어렵다.

마치면서

재일한국인들이 한국국적을 유지한 채 살아간다는 것에는 역사적, 도덕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나의 견해로는 재일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에는 심오하거나 특별한 의미는 없다. 재일 1세대들은 한반도 보다는 일본을 생활의 터전으로서 선택했으며 그 자손인 우리들도 단지 그것을 수용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부터도 일본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과 일본에서 생활하는 한은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숙지하고 있다. 우리들은 그러므로 우리들의 존재가 일본이라는 나라의 집단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불과 약간의 사명감 넘치는 사람들 때문에 외국인으로 살아갈 필요 따윈 없다. 즉 재일한국인들은 ‘영주외국인’ 등의 어중간한 존재보다는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살아가면 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귀화절차의 병폐를 지적하면 되는 것이다. 본서는 재일의 존재이유를 없애기 위해 쓴 책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외국국적을 갖는 한 정치적 권리에서 동 떨어질 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의 감각에서도 동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보충설명하자면 우리들은 국제사회·글로벌사회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생활과 행동의 실제적 단위가 되는 것은 국민국가라는 정치적 틀 안이며 그 체제는 국민간의 경쟁과 경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들은 일본국적을 갖지 않는 한, 내국인들과의 완전한 기회와 권리의 평등을 획득할 수 없다. 역으로 말하면, 일본국적을 취득하면 참정권과 공무원용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서 비로소, 우리들은 열등감으로부터 동정 받는 인간도, 특권으로부터 질투 받는 인간도 아닌 보통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재일에 관한 단행본을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지 본서의 바탕이 되는 작품들은 상당히 이전부터 발표되었으며, 정체성과 귀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나서 처음으로 기재한 것은 요미우리신문의 「논점」(1990년 6월 12일)이며 본

서와 거의 같은 내용의 논문은 『아스테이온』(No32,1994년 봄호)과 『正論』(2000년 8월호)에서 발표되었다. 또한 『아스테이온』지의 논문은 부분적으로는 도요타(豊田)재단으로부터의 연구조성을 얻고 게재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 그러한 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빠뜨리고 말았다. 여기에서 사과드리며 또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須久美雅씨로부터는 귀중한 조언과 격려를 받았다. 본서의 집필기회를 주신 関川夏央씨, 출산으로 휴가를 받은 초기의 담당자이신 中田奈子씨, 그리고 그 뒤를 담당해 주신 嶋津弘章씨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2001년 초봄

정대균



저자소개

저 자 : 鄭大均(정대균)

[약력]

1948년 일본 이와테(岩手)현에서 태어남.

릿쿄(立教)대학과 UCLA에서 공부함.

한국 계명(啓明)대학교 외국학대학 부교수직 등을 역임.

현재 도쿄도립대학 인문학부 교수직에 재임 중.

민족과 국민집단 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테마로 함.

[주요저서]

『한일의 평행론』(三交社),

『한국의 이미지』(中公新書)

『일본의 이미지』(中公新書) 등.

『在日韓国人の終焉』

本書の『在日韓国人の終焉』と言う題名を見ると、一見理解しにくいかも知れない。言葉そのものがやや極端な表現でもあるが、明確に何を意味しているのか分からないと言う部分も有るためだと思う。

「在日韓国人の終焉」とは在日の存在自体の終焉を意味するのではなく、これまでの在日韓国人としての生き方に対する存在意味を無くすことを意味している。それはもはや在日韓国人として生きるのではなく、日本社会で日本国籍を取得し、堂々たる社会の一員として生きていかねばならないからだ。

これまで彼らは韓国籍を維持したまま日本社会では異邦人のような存在として生活して来た。しかし日本で生まれ育ち教育を受け、今後も一生日本で過ごさなければならぬ彼らが、果たして韓国籍を持っているという事実だけで韓国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持っていると言えるだろうか。

このような状況下にある彼らにとって、韓国籍は一種の鎖のような意味を持つだけである。よって彼らにはそ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と帰属にずれがある。すなわち、韓国籍を保有していると言う明確な事実にも関わらず、韓国人と言う意識自体に欠けており、また日本社会で外国人でありながらその外国人としての意識にも欠けている。

結果的に彼ら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は日本人により近く、そうしたアイデンティティーに合わせて帰属、つまり国籍を変えるのが最も賢明で普遍的なことだと言えよう。そのため日本籍を取得することによって、これまでのような宙に浮いた存在のような曖昧な生き方でなく、堂々たる国民として国家の一員となり、その権利や義務を果たして生きて行くことになる。

これからはこうした在日同胞らの選択を批判するより勇気と励ましの心が必要であらう。そうしてこそ彼らは祖国の韓国人とも真の平等な関係で連結し続けることが可能になるだろう。